

對北對話戰略(7)

정책연구부

東·西獨關係發展類型斗  
韓半島導入可能性研究

1981. 2. .

國土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

○ 本 冊子는 1980年度 政策研究計劃에

依拠 外部에 委囑한 課題로서 서울大

金世源 教授가 作成한 것입니다.

○ 따라서 本 冊子の 內容은 当院의

見解가 아닙니다.

## 目 次

<要 約>.....	1
序.....	13
第1章 兩独間 接近을 위한 相互 基本立場.....	14
第1節 梗塞期(1949~63年).....	15
第2節 共存期(1963~69年).....	23
第3節 協力期(1969~ ).....	26
1. 独·소 및 独·「폴란드」条約.....	30
2. 4大強国間 「베르린」 協定.....	31
3. 東西独 首相會談 및 基本条約 締結.....	31
4. 正常關係의 發展.....	34
第2章 經濟去來.....	35
第1節 沿 革.....	35
第2節 遂行「메카니즘」.....	39
1. 去來의 性格 및 當事者.....	39
2. 支払 및 決濟.....	42
第3節 去來의 發展.....	46
1. 經濟的 与件.....	46
2. 東西独間 去來.....	55

第3章 重要交流에 관한 諸協定	63
第1節 人的往来 및 交通	63
1. 沿革	63
2. 「베르린」 通行協定	66
3. 交通條約	68
第2節 通信交流	71
第3節 社会·文化交流	72
1. 文化, 學術 및 芸術交流	73
2. 其他 社会部門 交流	74
第4章 結論 및 評價	75
1. 韓半島와의 類型比較	75
1) 類似한 側面	75
2) 相異한 側面	76
2. 評價	81
— 兩獨關係 發展의 韓半島 適用 可能性 —	
1) 兩獨關係의 發展類型	81
2) 教訓	84

## 要 約

### 1. 兩獨間 接近을 위한 基本 立場

兩獨關係의 接近過程은 西獨의 主導的位置에서 展開되었는바 이를 段階로 大別하면 다음과 같음.

#### ○ 硬塞期 ( 1949 ~ 1963 )

##### <西獨의 立場>

- 「아데나워」 政府는 旧 獨逸領土内 單一民主國家 建設을 推進

##### <東獨의 立場>

- 「울부리트」 政權은 「1民族2國家論」을 推進,  
53年 이를 公式化하고 68.4 制定 憲法에 明文化

#### ○ 共存期 ( 1963 ~ 1969 )

##### <西獨의 立場>

- 「에르하르트」 및 「키싱거」 政府는 從來의 政策

基調에 根本적인 修正을 가하지 않는 範圍内에서

그 運營에 伸縮性 示教

「할슈타인」原則 廢棄

東歐圈과 非政治部門 交流 擴大

— 1967. 4 經濟, 文化, 通行 및 人道部門 交流提案

<東獨의 立場>

— 西獨의 積極적인 對東方外交의 虛點을 겨냥, 逆

「할슈타인」原則 採択

○ 協力期 (1969年 以後 ~ )

— 「브란트」의 聯立政府는 新東方政策 (「할슈타인」

原則廢棄, 首腦會談 및 基本條約 締結, 4大強國間

「베를린」協定 등)을 公式 宣言, 獨逸內 2國家의

存在를 認定

— 이와 같은 現實主義的 政策基調를 標榜하게 된

背景은

첫째, 西獨은 1民族 1國家論에 반해 東獨은 1民族

2國家論을 固守함으로써 從前의 國家觀의 不可避

한 變更을 招來하게 되었다는 點

둘째, 東獨의 國際政治, 軍事的 事件의 變化, 東西歐  
間의 勢力均衡의 變化, 獨逸人의 統獨에 대한  
意識變化 등으로 統獨에 앞서 兩獨間 交流擴大  
를 통한 民族的 單一性 鼓吹

세째, 소聯 및 東歐 등은 中·소紛爭, 對西方政治·  
經濟協力의 必要性 등으로 東西間 緊張緩和를  
위한 外交展開가 不可避하게 되어 「新東方政策」  
의 追求가 比較的 容易하였다는 點.

네째, 美國, 프랑스 등 西方側이 統獨을 不願함과  
同時에 이를<sup>爲</sup> 위한 西獨의 政策에 否定的인 反應  
을 보이고 있었다는 點. 結論적으로 兩獨의 存  
在 그 自体가 國際政治, 軍事秩序, 平和의 前提가  
된 以上 東西方 共히 統獨을 위한 努力이 오히  
려 勢力均衡을 攪亂시킬 우려가 있다는 立場에  
있었으며 또한 獨逸의 分斷狀態가 西方側의 對소  
協商 余地를 提供하는 一種의 緩衝劑<sup>的</sup>의 役割에  
寄與한다고 判斷하였음.

## 2. 兩獨間 經濟去來

- 經濟去來는 分斷初期부터 始作 ( 45.8 「占領地域間 貿易」合意 ) , 51.7 獨逸 「마르크」貨 流通地域과 獨逸發券銀行 流通地域間의 貿易協定締結 ( 베를린協定 ) 에 의해서 現在까지 活潑히 展開되고 있음 .
- 兩獨間 貿易에 對한 西獨立場은 對東獨貿易 去來를 政治的協商權의 優位確保 및 「베르린」統合을 위한 壓力手段으로 利用한 反面에 東獨은 對西獨貿易을 外國貿易으로 看做 , 間接적으로 國際法上的의 國家承認意味 , 經濟的實利 및 對西方 經濟通路로 活用함으로써 地位向上을 圖謀
- 決濟 및 支払方法
  - 決濟는 西獨 聯邦銀行과 東獨中央銀行內에 淸算계정의 設置를 通해 이루어짐 .
  - 貿易去來에서 輸出入의 均衡을 模索했으나 輸出入의 均衡이 維持되지 않음으로써 이를 補完키 위해 總收支差額을 西獨 「마르크」貨 ( DM ) 로 支払 ( 63年



合意), 西獨이 一定限度의 範圍內에서 清算信用 (Swing)을 供與

○ 東西獨間 去來의 特徵

— 東獨은 經濟計劃의 遂行을 위한 資本施設材의 導入의 不可避性으로 對西方 先進國 輸入을 擴大해야 하는 立場에 있으므로 兩獨間 貿易去來의 急速한 發展을 가져왔음.

— 西獨은 繼續 黒字維持, 東獨은 73年以後 國際收支 逆潮現狀을 示顯, 이의 是正策으로 基本條約締結 (1972年)後 商業「베이스」 貿易補完傾向을 나타내고 있으며, 西獨은 東獨의 外貨負擔輕減 및 輸入 能力의 支援을 위해 東獨에 前年對比 供給額의 25%를 無利子 産業財政借款 形態의 「스윙」供與

3. 重要交流에 관한 諸協定

○ 「베를린」通行協定 (1971.12 조인)

— 旅行者의 保護

— 人的往来 節次의 迅速, 간소화 및 緩和

— 物資輸送 節次의 緩和

— 交通便宜의 大幅的인 改善

— 通行委員會의 設置

○ 交通條約 ( 1972.5.26 조인 )

民間人 相互 訪問 大幅緩和와 鐵道運行, 貨物運送, 國內船舶利用, 自動車利用, 海運 등 包括的인 交通關係의 改善과 交通委員會 設置를 規定

○ 通信交流協定 ( 1971.9 조인 )

兩獨間 通信業務의 改善과 電話, 電信業務의 擴大

○ 社會文化交流

— 文化, 學術 및 藝術交流

東獨側은 이 分野의 交流에 대하여 積極的 立場을 취하고 있으며 西獨側은 國家承認問題를 回避하기 위해 이를 拒絶해 왔으나 72年 基本條約締結로 73. 11 以後 이를 위한 協商이 再開되었음.

#### 一 其他 社会部門 交流

基本条約 締結로 73年 以後 西獨의 一部 言論  
機關이 東獨內 支社設置와 特派員을 駐在시키고 있으  
며, 兩獨의 言論機關이 特殊한 境遇 相對地域內 入國  
또는 必要한 書籍의 輸入이 可能하나 크게 制限되어  
있음.

#### 4. 結論 및 評價

##### ○ 韓半島와의 類型 比較

##### 一 類似한 側面

△ 一民族, 一國家가 強大國間의 妥協의 所산으로  
分斷됨으로써 統一問題가 恒常 論議될 수 있는  
共通性을 갖고 있음.

△ 分斷狀態의 持續과 당초 分斷을 招來한 強大國  
들의 統一에 대한 消極的 態度

\* 韓國과 獨逸은 周辺 強大國間의 勢力均衡 維  
持의 焦點으로 登場, 強大國들은 現狀維持를 持  
續하기 위해 分斷 当事者들의 直接的인 協商을

排除하려 하고 있음.

— 相異한 側面

区 分	独 逸	韓 国
分断 固 定化 要因 의 強弱	強 함 ○ 分断 狀況의 變化에 대한 強大國의 反應 敏感으로 現狀持續이 切實 ○ 集團防衛에 대한 實 際的 保障確認	弱 함 ○ 獨逸에 比해 強大國 立場이 되지 못하며 周邊強大國과 政治, 經 濟  등의 紐帶가 緊密 치  못함. ○ 北韓은 中·소의 防衛 保障을 받고 있으나 韓國은 美國의 迅速한 實質的인 防衛保障 未洽
地理的인 面	○ 유럽의 中央에 位置 傳統的으로 周邊國家 들과 密接한 關係및 相互依存度 維持	○ 韓半島는 強大國들  틈 에  낀 弱少國으로서 中·소  등과의 相互 貿易依存도가 낮고 美·

区 分	独 逸	韓 国
		日의 去來도 空·水路를 利用함으로 南北韓 去來推進에 寄與하지 못함.
国内的 与件面	○ 兩獨은 先進工業國 ○ 西獨의 懸隔한 經濟的優位 確保	○ 南北韓 共히 後進性 脫皮 未洽 ○ 韓國이 北韓에 對해 優位에 있고 앞으로 이 差異는 보다 深化 될 것이나 西獨과 같은 位置에는 未達
体制面	○ 東獨은 社會主義 國家이나 基督教信仰, 個人主義 發達, 合理的思考, 높은 教育水準, 西方의 影響 등으로 西方과의	○ 北韓은 獨裁的, 廢鎖的 體制維持, 傳統的 價值 觀 欠如 地理的 孤立 등으로 硬直된 狀態

区 分	独 逸	韓 国
	妥協可能性 및 開放 的 側面 保有	
協商追求 形 態	○ 「協力型」	○ 「統一型」
統一接近 方 法	○ 先平和定着, 後統一 論議 - 外軍駐屯은 이에 대한 實質的인 保障	○ 韓國의 「先平和, 後統 一」에 대해 北韓은 모든 提案의 前提条件 으로 美軍撤収, 外勢 排除를 主張 * 韓國이 北韓提案을 受諾하더라도 이를 위한 實質的保障措置 가 없음.

## 8. 評 価

### 一 兩獨關係 發展 類型

西獨政策은 分斷을 既定事實化하여 統一에 支障을 超

來한다는 非難을 받을 수도 있음.

그러나 이는 理想을 實現할 수 있는 可能性이 거의 없을 때 現實主義에 立脚한 次善의 政策이라 할 수 있으며 統一을 위한 國內外的인 條件이 成熟될 때까지 相互 接觸交流를 通하여 獨逸民族의 單一性을 維持하고 現在의 環境을 克服하는 賢明한 方法일 수 있음

#### 一 教 訓

△ 相異한 體制下에서도 統一論議 없이 經濟, 文化, 社會 등 諸分野에서의 去來, 交流가 可能하며 이에 阻害되는 어떤 要素도 相互 協議를 通해 克服할 수 있다는 點.

△ 兩獨間 交流는 制限的이긴 하나 分斷初期부터 持續되어 온데 비해 南北韓 交涉이나 去來는 始初부터 政治的 合意를 前提로 하고 있다는 點.

△ 兩獨間의 關係는 相互 國家承認關係라는 點에서 「協力型」을 捫하고 있으나 韓半島에서는 相互 交流에 관한 모든 提案은 「統一指向型」이 아니면 안된다는 點.

△ 西獨이 모든面에서 東獨보다 절대 優位에 있다는 점. 그러므로 南北關係를 우리가 원하는 方向으로 誘導하기 위해서는 安定의 바탕 위에서 一早速히 經濟 大國으로 登場해야 하며 体制의 長點을 誇示할 수 있는 民主主義의 土着化도 併行되어야 함.

이런 의미에서 南北韓間의 關係正常化는 서두를 必要가 없이 理想的인 統一方案을 提示한 後 經濟部門, 人道的側面에서의 段階的 接近을 試圖하면서 內實을 기해야 함.

△ 南北去來를 可能케 하기 위해서는 北韓의 劣等意識을 자극치 않기 위해 對等한 立場이 強調되어야 함.

△ 南北韓 關係도 強大國의 影響力이 重要한 因子가 되므로 南北韓 關係의 展開에 有利하게 誘導할 수 있는 外交政策의 確保가 必要함.



## 序

本 研究는 東西獨間 諸 關係發展을 分析, 再定立함으로써  
이의 韓半島에 對한 適用 可能性과 限界를 檢討하는데 있  
다.

이제껏 兩獨間 關係의 分析을 위한 많은 資料 및 研究  
가 發表되었으나 南北韓間 適用問題에만 着점을 맞춘 內容  
은 극히 制限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意味에서 第1  
章에서는 政策基調의 轉換을 中心으로 세 단계로 区分하여  
兩獨關係에 對한 相互政府 立場에만 局限하여 基本立場의  
推移를 分析, 要約하였다.

다음 第2 및 第3章에서는 兩獨間 締結된 重要協定을  
中心으로 交流의 發展을 살폈는데 特히 經濟去來의 重要性  
을 勘案하여 보다 詳細히 그 遂行「메카니즘」 및 結果  
分析에 對하여 重點을 두었다.

끝으로 第4章에서는 結論삼아 兩獨의 境遇에 比한 南北  
韓間 關係의 類似點과 相異點을 綜合, 要約한 後 適用可能  
성과 示唆하는 바를 檢討하였다.

## 第1章 兩獨間 接近을 위한 相互基本立場

1949年 9月 및 10月 「獨逸聯邦共和國」(Bundesrepublik Deutschland, BDR, 以下 西獨이라 稱함)과 「獨逸民主共和國」(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DR, 以下 東獨이라 稱함)이 各各 政府를 樹立함으로써 獨逸은 韓國, 越南 및 中國 等과 함께 分斷國으로 登場하였다. 그 後 79年 10月 東西獨 國境協定이 締結되기까지 約 30年間 兩獨間 協商의 過程에서 重要 議題로 論議되어 온 問題는 統獨, 國境, 國家承認, 西「베르린」의 地位 그리고 兩地域間 諸去來의 推進 等으로 要約된다.

이러한 問題들에 關한 兩獨의 立場은 期間別로 커다란 差異를 나타내어 왔는데 이는 兩地域內 政權의 變化는 勿論 國內外 政治-經濟的 與件의 推移와 特히 重要 強大國의 政策的인 配慮에 起因한다. 兩獨關係의 展開過程에서 西獨이 優位, 나아가 主導的인 位置에 있었으므로 이를 中心으로 살피고져 하는데 크게 세단계로 分類될 수 있다.

첫째 49년부터 63년에 이르는 「아데나워」執政期로서 西獨側의 強硬路線이 持續되는 期間에 該當한다. 이 期間中 兩獨關係에 있어서 何等의 實質的인 改善은 없었으며 分斷의 固定化가 定着되고 「아데나워」式의 接近이 限界에 이르러 政策基調의 轉換이 要請되었다.

다음 63년부터 69년까지의 「에르하르트」-「키싱거」 時代に 들어서서 東西和解 및 協力「무드」의 造成과 함께 西獨의 對東獨 내지는 對東方政策은 크게 緩和, 修正되기 始作하였다. 이 期間은 一種의 過渡期로서 兩獨間 立場의 定立, 그리고 接近을 위한 妥協點의 摸索에 그 重点이 두어졌다고도 할 수 있다.

끝으로 69年末 「브란트」의 執政 以後 期間으로서 西獨의 對東方政策의 基本方向이 크게 修正되었음은 勿論 兩獨間 頂上會談을 비롯하여 直接 協商이 進行되고 現狀을 前提로 한 各種 重要 條約이 締結된 時期이다.

### 第1節 梗 塞 期 (1949年~63年)

「아데나워」政府의 政策基調는 우선 對內的으로 37年을 基準으로 한 舊獨逸 領土內 單一民主國家의 建設, 그리고 對外的으로는 美國을 主軸으로 하는 西方強大國과의 紐帶強化를 통한 對소 優位의 維持였다고 할 수 있다.<sup>1)</sup> 即 「오데르·나이제」(Oder-Neisse) 以東의 失地回復에 對한 執念, 「할슈타인」原則의 固守 및 自由 總選舉에 依한 統獨案 等を 對東獨政策의 代表的인 內容으로 들 수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外交政策은 對美·「프랑스」 政治· 經濟關係의 強化와 EEC를 비롯한 「유럽」統合에의 積極參與 및

註1) : Wolfram F. Hanrieder, Die Stabile Krise, Dussedory, Bertelsmann Universitätsverlag, 1971, PP.97-98 參照.

NATO 와 같은 西方 결속을 趣旨로 하는 國際機構의 加入에 그 重点이 두어졌다.

勿論 獨逸의 分割이 戰爭의 産物이며 「포츠담」會議에서 그 具體적인 內容에 合意가 이루어졌으나 政權의 樹立 過程에 있어서 西獨과는 달리 東獨이 소聯의 介入에 의하여 非民主的 節次에 依拠한 一種의 衛星的 性格을 띄고 있다는 點에서 「아데나워」는 強硬한 姿勢로 一貫하였다.<sup>2)</sup> 따라서 西獨만이 唯一한 合法的 政權이며 東獨을 包含하는 全獨逸을 對外的으로 代表할 수 있다는 立場은 當然한 結論이었다. 東獨의 承認을 意味할 수 있는 一切의 政策을 否認하였으며 나아가 協商을 拒否하였고 오직 美·소 등 強大國과의 對話를 通하여 獨逸問題를 解決하려 하였다.

韓國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西獨政府의 統獨에 關한 最初의 公式的인 提案은 「유엔」 테두리內에서 自由總選舉의 實施였다.

51年 3月 聯合國側 4個 占領國에 提出된 同案을 貫徹시키기 위하여 西獨政府 代表가 同年 12月 「빠리」에서 開催된 「유엔」 政治委員會에서 이를 要求하는 具體적인 發言까지 行하였으나 이 역시 東獨의 拒否로 何等의 成果를 거두지 못하였다.<sup>3)</sup>

註2) : Heinrich End, *Zweimal deutsche Aussenpolitik*,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Köln, 1973, P. 21 以下

3) : 西獨政府의 要請에 따라 「유엔」總會는 調査委員會를 構成하였으며 52年 3月 活動을 開始하려 하였으나 東獨 및

이러한 西獨의 統獨案에 對하여 東獨은 獨逸內 「두개의 國家論」을 準備하였으며 이미 53年부터 이를 公式化하였다.<sup>4)</sup> 即 敗戰과 함께 滅亡한 「나치」獨逸의 國家權力은 聯合國의 占領이라는 過渡期를 거쳐 獨逸領土內 두개의 國際法的 個別國家에로 移讓되었다는 主張이다. 이 立場은 68年 4月 制定된 東獨의 新憲法에 明文化되었다.<sup>5)</sup>

이와함께 四強大國 또한 獨逸의 統一과 關聯된 提案들을 推進하였는데 소聯이 東西間, 좁게는 「유럽」內 勢力均衡의 維持에 重點을 두었던데 反하여 西方 陣營은 總體的으로 西獨의 立場을 支持하였다.

最初의 소聯案은 50年代 初 獨逸의 中立化로서 이는 選舉實施의 境遇 共産黨의 不利한 立場<sup>6)</sup>, 그리고 西獨의 軍事同盟 加入과

---

東「베르린」 入國拒否로 挫折되었다. 그後 「아데나워」首相은 美政府에 自由選舉를 內容으로 하는 8個項의 統獨方案을 提示한바 있으나 아 역시 實現을 보지 못하였다.

4) . 例로 1953年 9月 17日 第16次 東獨共産黨 黨大會에서 行한 「울부리히트」書記長의 演說에서도 「두개의 獨逸論」은 明白히 나타나 있다.

5) : 同 憲法 第8條에서는 「民主主義와 社會主義의 基礎下에서 統一을 成就하기 위하여 2個의 獨逸國家는 努力한다」라고 強調되고 있다.

6) : 한 例로 1946年 10月 「베르린」 州議會 選舉에 있어서 共産黨은 總 130席中 26席 밖에는 차지하지 못하였다.

함께 再武裝 機會를 沮止 하자는 配慮 等を 勘案한 對案이라 할 수 있다. 同案이 西方側에 依하여 拒否되었음은 勿論 그 後 55年 兩獨議會로 構成되는 全獨委員會가 獨逸內 諸問題를 解決케 하자는 「모르토프」案 역시 東西冷戰의 進行으로 何等의 結果를 보지 못하였다.

이 期間中 西獨은 「아데나워」에 의한 「힘의 政策」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經濟建設에 注力하는 一方 政治·軍事·經濟面에서 西方 強大國과의 統合을 追求함으로써 이들의 支持를 얻을 수 있었다.

戰後 西獨은 東獨에 比할 수 없을 程度로 戰後 復舊를 早速히 實現할 수 있는 有利한 經濟的 條件에 있었으며 또 이러한 條件을 充分히 利用하여 後述하는 바와 같이 西歐內 第1의 經濟大國으로 登場할 수 있는 기틀을 이룩하였다. 이와같이 政治體制뿐만 아니라 經濟的인 側面에 있어서도 이미 50年代 初 經濟的 效率性과 幅넓은 社會福祉를 근간으로 하는 所謂 社會市場 經濟 (Social Market Economy) 體制의 確立과 함께 安定的 成長基盤을 마련함으로써 越等한 優位를 차지하였다.<sup>7)</sup>

---

註7) : 戰後 西獨 經濟哲學의 基盤과 이에 立脚한 經濟政策에 關하여는 例로 A.Müller-Armack, The Social Market Economy, in German Economic Review, 1965, Vol. 3, No 2 ; G.Hallet, The Social Market Economy of West Germany, Mc Millan,

对外的으로는 OEEC (「유럽」經濟協力機構)<sup>8)</sup>, ECSC (「유럽」石炭  
鋼鐵共同体) 및 EEC 等に 加入함으로써 西歐内 「유럽」諸国間  
多边的 經濟協力, 統合에 積極 参与하였고 Council of Europe  
(「유럽」理事会), Western European Union (西「유럽」聯盟),  
및 NATO 等の 加入을 通하여 西方과 政治協力の 強化와 共同防  
衛를 追求하였다.

社会民主党을 비롯한 国内 一部 勢力的 反對에도 不拘하고 「아  
테나워」의 끈질긴 努力의 德沢으로 51年 3個 占領国과의 合意  
에 따라 西独의 再武裝이 可能케 되었으며 52年 「본」 平和協  
定の 締結에 따라 西方 軍隊駐屯權利의 合法性 및 西「베르린」에  
대한 西独의 自治領化 等이 이루어졌다. 또 54年 10月 西独이  
WEU 및 NATO에 正會員国으로 加入함으로써 다른 強大國들과  
同等한 地位의 主權國家로 부상하게 되었다.

事實 西独의 对西方 統合努力은 한마디로 自由民主主義 國家로서  
의 基盤을 鞏固히 함은 勿論 西方 強大國의 支持를 얻고 또  
當時 独逸問題에 関한 限 唯一한 協商의 対象國으로 看做하였던

---

1973 ; 拙稿, “西独과 「이스라엘」의 經濟危機克服戰略에 関한  
研究”, 國際問題調查研究所, 研究論叢, 1980, 第3輯, P.44 以下  
8) : 同 機構는 60年 OECD에 依하여 그 趣旨 및 機能이 繼承  
되었다.

소련과의 交渉權을 強化하자는 趣旨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試圖는 한 例로 西獨으로 하여금 ECSC나 EDC (「유럽」防衛共同体)와 같은 모든 「유럽」聯邦主義의 推進에 積極 協助케 하였으며 심지어 「아데나워」는 過去 敵對關係에 있었던 「프랑스」의 外交的 支援을 얻기 위하여 부심한 結果 「골리스트」라는 別名을 갖게 될 程度였다. 그 以外 「할슈타인」原則과 같은 強硬한 對東獨 立場에도 不拘하고 西獨은 소련과 55年 修交에 合意하였으며 同年 「아데나워」는 「모스크바」를 訪問하여 「호루시초프」와 會談하였다.

西獨의 이러한 努力이 主로하여 50年代 中盤까지 美·英 및 「프랑스」의 統獨問題와 關聯된 提案은 「아데나워」의 主張과 大同小異하였다.<sup>9)</sup> 그러나 50年代 後盤 東西間 平和共存期에 들어서면서 特히 西歐諸國의 經濟回復과 더불어 多極化時代가 展開되면서부터 西方強大國은 더 以上 西獨政府의 立場에 積極的으로 同調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또다른 特徵의 하나는 統獨問題는

---

註9) : 例로 54年 1~2月 「베르린」 4個國 外相會議에 提出된 「이든」의 단계적 統一方案, 同年 10月 西方 3個國 「런던」 會談 後 發表된 西獨의 单独代表權에 關한 共同宣言 및 55年 「제네바」 4個國 外相會議에서 論議된 美國의 統獨方案 등을 들 수 있다.



보다 東·西獨 内部의 問題로 看做됨으로써 兩地域이 直接 相互 立場을 主張하기에 이르렀다는 點이다.

具體적인 例를 든다면 「프랑스」의 境遇 「드골」은 和解 (Detente) - 協力 (Cooperation) 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東方政策 을 追求하기 始作하여 59年 「오테르-나이제」線을 「폴란드」의 西部 國境으로 認定한다고 發表하였다. 또 62年 4月의 美國 「러스크」案 역시 事實上 東獨政權과 「폴란드」 國境線의 設定을 意味하는 內容을 包含함으로써 從前의 態度를 바꾸었다.

한편 西獨政府는 東獨政權 및 「폴란드」 國境의 不認定, 「할슈 타인」原則의 固守 그리고 「나토」의 核武器政策에 대한 支持 等 強硬한 立場을 持續하였으며<sup>10)</sup> 東獨 또한 從前의 主張을 集約한 所謂 國家聯合案을 56年 및 61년에 걸쳐 再確認하였다.<sup>11)</sup>

註10) : 例로 56~57年 西獨의 統一方案 및 61年 9月 第4次 聯立政府 樹立 後 公表된 對東獨政策

11) : 西獨과 對等한 主權國家로서의 認定을 前提로 한 同案은 兩獨議會代表로 構成되는 全獨逸理事會로 하여금 東·西獨 接近 問題를 다루게 하자는 趣旨를 갖고 있었다. 그 以外에도 同案은 1) 獨逸內 核武器의 製造 및 貯藏禁止, 2) 西獨의

待記할 것은 同期間中에도 주로 民間的인 또는 非政治的인 次元에서 兩獨間 對話나 交流의 擴大를 위한 努力이 展開되어 왔다는 點이다.

이미 49年 12月 西獨의 基民黨과 東獨의 基民黨 및 統社黨 代表間 接觸이 있었으며 54年 7月 「라이프치히」에서 開催된 新敎大會에서는 兩獨 議會議長이 討論을 가진 바 있다. 그 後 56年 10月 西獨 自民黨과 東獨 自民黨 代表間 「바이마르」에서 統獨問題에 關한 討論이 進行되었으며 「베르린」 장벽이 구축된 以後에도 兩獨關係 改善을 위한 提案이 登場하였다. 兩獨 交流에 關한 提議는 主로 東獨의 主張이었는데 當時 「아테나워」의 立場으로 미루어 受諾될 수 없었음은 當然하였다.<sup>12)</sup>

「나토」 및 「바르샤바」條約 脫退 및 軍備縮小, 3) 獨逸內 外國軍 撤収, 4) 西「베르린」의 非武裝 自由市化 및, 5) 1959年 1月 1日 基準 獨逸國境의 確定 등의 內容을 갖고 있었으며 그後 出근 소聯 및 東獨의 公式立場으로 登場하여 왔다.

12) : 한 例로 「올브리히트」는 61년에 이어 63年 1月 SED 第6次 黨大會에서 1) 스포츠 및 文化交流, 2) 兩獨間 交通往來 그리고, 3) 貿易條約의 締結 等 7個項에 達하는 具體的인 對案을 提示한바 있다.

## 第 2 節 共存期 ( 1963 ~ 69 年 )

「아데나워」에 뒤이어 登場한 「에르하르트」 및 「키싱거」政府는 이 제것 追求되어 온 政策基調 自体에 根本적인 修正을 加하지는 않았으나 그 運営에 있어서 相當히 伸縮性을 期하였다. 特히 「키싱거」의 大聯政期에 들어서서는 「할슈타인」原則의 實質的 廢棄 및 東獨의 事實上 認定까지를 斷行함으로써 「브란트」体制에로 移讓하는 過渡期的인 役割을 担当하였다.

「에르하르트」-「쉬뢰더」政策을 要約한다면 国内 安保体制의 確立과 莫強한 經濟力을 背景으로 東歐圈과의 外交關係는 樹立하지 않되 經濟를 中心으로 한 諸非政治部門에 있어서 交流를 擴大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西獨은 「폴랜드」( 1963.9 ), 「불가리아」( 1964.10 ), 「헝가리」( 1964.10 ) 및 「루마니아」( 1965.5 ) 등과 貿易協定을 締結하고 相互間 貿易代表部를 設置하였다. 이는 當時 東西 緊張 緩和를 契機로 西歐諸國이 東歐諸國과 貿易 및 經濟協力을 急速히 增加하기 始作한 時期와도 一致한다.

「아데나워」路線과 같이 「에르하르트」는 美國과의 緊密한 政治· 軍事協力을 통한 對 소協商權의 強化를 追求하였고 소聯을 비롯한 東歐諸國과 不可侵條約을 締結할 用意在 있음을 主張하였다. 또 核武器를 비롯한 軍備의 制限 또는 비록 安保 및 軍備問題를 協商할 수는 있으나 東獨을 承認할 수는 없다는 立場은 如前히 持續되었다.

이렇게 볼때 「에르하르트」政權은 政治, 軍事 및 經濟 等 諸分野에 있어서 西獨의 優位 維持 그리고 소聯 等 對東歐 關係改善을 通하여 東獨의 地位를 弱화 乃至는 孤立시킨다는 方向으로 外交戰略을 推進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政策이 保守的인 立場을 取하는 基民黨은 勿論 보다 進步的인 思考를 갖고 있었던 社民黨이나 自民黨의 支持를 얻을 수 없었음은 勿論이다.

反面 66年末 登場한 「키싱거」·「브란트」大聯政은 当初부터 東獨을 하나의 實體로 認定하는 積極的인 政策 以外에도 國境線의 認定과 關聯된 「뮌헨」協定の 無効宣言, 그리고 「할슈타인」原則의 廢棄 等 보다 果敢한 立場을 取하였다. 한 例로 67年 5月 公式 接受되고 이에 對한 回信이 傳達됨으로써 西獨은 東獨을 事實上의 國家로 認定하는 結果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키싱거」는 東西獨間 關係改善을 爲한 直接協商까지를 提案하였다.<sup>13)</sup> 勿論 「할슈타인」原則을 公式的으로 取消하지는 않았으나 同期間 「루마니아」 및 「유고」와 國交를 樹立 또는 再開하였으며 「체코」와 通商協定을 締結하여 東歐諸國의 境遇 例外를 認定한다고 하였으나 同原則은 實質的으로 큰 意義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後日 「브란트」의 東方政策에 依하여 繼承되는 對東獨協商이 試圖된 것도 바로 이 時期로서 어떤 意味에서는 機能主義的 接近의

註 13): Der Spiegel, 13/1967, pp.42. 以下參照.

採択으로도 特徴지워진다。

67年 4月 西独이 東独과의 交流增進을 爲하여 提示한 代案을 羅列하면 다음과 같다.<sup>14)</sup>

1) 經濟部門

가) 借款을 비롯한 經濟去來의 擴大

나) 決濟問題

다) 「에너지」部門 및 電力開發에 있어서의 協力增進

라) 交通網의 共同建設

2) 文化部門

가) 青年 및 學生團體의 相互 交流

나) 文化團體의 相互 接觸

3) 通行 및 人道部門

가) 觀光을 비롯한 旅行範圍의 擴大

나) 「베르린」 및 兩獨 隣接地域間 通行協定の 締結

다) 兒童을 包含하는 家族의 再會

라) 醫藥品 및 膳物交換에 對한 制限의 撤廢

68년에 이르러 以上の 提案을 實現하기 爲하여 또 兩獨間 緊張緩和를 趣旨로 「브란트」外相의 東獨訪問이 이루어졌고 「빈저」外相의 聲明書가 公表되었다。

註 14) : 國土統一院, 東西獨 關係正常化 過程 研究, 1975. 8, pp. 52 ~ 53.

그러나 兩獨間 相互 接觸의 試圖와는 対応的으로 「키싱거」의 對東獨政策은 몇가지 限界에 부딪치게 되었다.

于先 東獨은 西獨의 積極的인 對東獨 外交의 虛點을 노려 所謂 逆「할슈타인」原則을 主張하였다. 即 모든 社會主義諸國은 西獨이 東獨의 承認, 國境線(「오데르」-「나이제」)認定 및 武力不可侵 宣言 等を 하지 않는 以上 西獨과 外交關係를 樹立하여서는 안된다는 立場을 取하였으며 이러한 逆「할슈타인」原則을 數次에 걸쳐 「바르샤바」條約機構 會員國의 公式的인 政策으로 採択하도록 努力하였다.

다음 西獨의 活潑한 對東獨接觸과 一部 東歐內 自由化 擴散의 움직임은 結局 68年 소聯의 主張에 따라 「바르샤바」條約軍의 「체코」侵攻事態를 가져옴으로써 「制限主權論」을 뒷받침하였다. 東獨은 나아가 東歐와의 交渉에 있어서는 역시 소聯의 態度가 關鍵을 갖고 있다는 結論이다.

### 第3節 協力期 (1969年 以後)

69年 10月 誕生한 「브란트」의 社民黨·自民黨 聯立政府는 바로 이러한 前期의 限界狀況으로 부터 出發하였으며 美, 英 및 「프랑스」等 主要諸國內 政權交替 그리고 中·소 國境紛爭과 같은 外部的인 與件의 變化는 西獨政府의 政策推進에 比較的 肯定的으로

作用 하였다.

「브란트」首相은 이미 執政 以前 「슈미트」를 團長으로 하는 社民黨의 對 소 使節團의 派遣을 通하여 소聯의 意圖를 再確認한 後 69年 10~12月 다음과 같은 內容의 新東方政策을 公式的으로 發表하였다.

- 1) 獨逸內 2國家의 存在를 認定하나 이는 東獨에 對한 國際法上의 承認이 아니며 國內法上의 承認임.
- 2) 兩獨은 相互 外國이 아니라 特殊關係이나 東獨과 一般的인 國家間 關係에 立脚한 不可侵條約을 締結할 用意가 있음.
- 3) 獨逸에 對한 四大強國의 權利와 義務를 繼續 尊重할 意圖임.
- 4) 核擴散 禁止條約에 署名할 予定임.
- 5) 東西獨間 經濟, 文化部門에서의 協力提議.
- 6) 소聯 및 「폴란드」와의 武力拋棄協商 提議
- 7) 「할슈타인」原則의 公式的인 廢棄
- 8) 「폴란드」와 「오데르·나이제」國境 協商 用意
- 9) 「뮌헨」協定の 無効化 宣言<sup>15)</sup>

이와같이 「브란트」가 보다 現實主義的 政策基調를 再確認하게 된

註 15) : 同上, p.68~69 : 同, 東西獨 交流事例와 南北韓의 適用可能性, 1974.7, p.17~19 : 同, 西獨의 東獨政策의 姿遷과 西獨의 國內外 事情, 76.12, p.32 : 同, 東西獨 各種交流와 關聯된 諸 問題 및 解決實態, 78.12, p.14 以下.

背景을 總體的으로 다음과 같이 綜合할 수 있다.

첫째 獨逸內에 만 局限시키더라도 統一에 關하여 兩獨間의 公式的인 見解는 平行을 이루어 決코 좁혀질 수 없다는 點을 指摘할 수 있다. 卽 「아테나워」式의 思考에 따르면 獨逸帝國은 45年 敗戰을 契機로 強大國에 依하여 分割되었으나 單一性은 그대로 存統하며 두개의 政治組織으로 分離, 運營되나 그 어느 政治體制도 獨逸帝國의 法的 正統 後繼者가 아니므로 民主方式의 總選에 依하여 統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態度가 東獨側에 받아들여질 수는 없었으며 初期 「올브리히트」는 東獨의 獨逸帝國에 對한 法統性을 主張하다가 53年 부터는 「一民族 二國家論」으로 代替하였으며 68年 4月 制定된 憲法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明文 規定을 挿入하였다. 그後 「브란트」政府가 東獨의 承認이라는 立場에 까지 接近하자 「올브리히트」는 70年代에 이르러 從前의 國家觀을 變更하였다.

이와같이 兩獨間 獨逸의 地位에 對한 엇갈리는 乃至는 相反되는 主張이 持續되는 限 交流의 增大를 爲한 協商 可能性을 생각할 수 없을 때 結局 統一問題를 言及함이 없이, 그리고 民族의 單一性을 留保한 채 兩獨間 共通되는 妥協點을 摸索한 것이 「브란트」案이라 하겠다.

둘째 「브란트」의 統獨觀이 現實 與件에 立脚한 反面 그 展望을 明確히 하지 않고 있다는 點이다.

西獨이 西歐內에서 第一의 經濟強國으로 登場하였을 뿐만 아니라



國際政治關係에 있어서도 地位나 發言權이 強化되었다면 東獨 역시 소聯 다음으로 東歐內 經濟大國으로 成長하였고 國內 政治·經濟安定을 이룩함으로써 國際的인 位置를 確固히 하였다. 이러한 狀況에서 統獨은 國際政治·軍事的 與件의 變化, 西歐內 勢力均衡의 變化 그리고 獨逸人의 統一에 對한 意志 等に 期待할 수 밖에 없으며 西獨政府로서는 兩獨間 交流의 擴大를 通하여 民族的 單一性을 鼓吹하여주는 役割 以外 다른 對案이 없을지도 모른다.

세계 소聯 및 東歐의 立場을 들 수 있다.

소聯은 이미 60年代末 以後 安保政策的 考慮下 統獨의 反對, 現 「유럽」內 勢力均衡의 維持, 西獨의 武力侵略 拋棄 및 對東歐 政策에 있어서 「브레즈네프」 「닥트린」의 確認 等 對西獨政策 基調를 明確히 하고 있다. 그러나 中·소紛爭, 對西方 政治·經濟 協力の 必要性, 또는 東歐諸國의 實質的인 反撥 等으로 東西間 緊張緩和를 爲한 外交를 展開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는 「브란트」의 新東方政策의 追求를 比較的 容易하게 하였다. 69~70年 「유럽」安保會議 및 「유럽」 相互 減軍案을 비롯하여 東西間 和解를 意味하는 多樣한 對案이 推進되기 始作하였다.

끝으로 美國 및 「프랑스」等 西方側 역시 統獨을 願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爲한 西獨의 政策을 支援할 意思를 갖고있지 않다는 點이다. 「유럽」의 外交史가 한마디로 勢力均衡의 維持에 그 焦點이 두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兩獨의 存在 그 自体가 國際政治·軍事秩序, 나아가 平和의 前提가 된 以上 統獨을 爲한

努力은 오히려 이 均衡을 攪亂시킬 憂慮가 있다는 立場이다.

또 獨逸의 兩分狀態가 西方으로 하여금 소聯과 協商, 妥協을 摸索할 수 있는 여지를 提供하고 있으므로 一種의 緩衝劑的 役割에 寄與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卽 西獨에 對한 支持는 統一問題와는 關係없이 對소協商에 있어서 西方의 位置를 強化하는데 重點이 두어지며 分斷現象은 強大國의 立場에 同調하지 않을 수 없는 西獨의 弱點으로 登場하고 있다.

以下 西獨의 東獨을 包含하는 新東方政策의 重要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sup>16)</sup>

#### 1. 獨·소 및 獨·「폴랜드」條約

70年 1月 「모스크바」에서 西獨 「바르」特使와 「그로미코」外相間 交渉이 始作되었으며 同年 8月 全文 5條의 獨·소條約이 締結되었으며 獨逸統一에 關한 西獨政府 公翰이 이에 添附되었다.

同 文書는 歐洲 平和維持, 紛爭의 平和的 解決 및 武力使用 拋棄, 「오데르·나이제」를 包含하는 現 「유럽」 困境線의 尊重 그리고 獨逸民族의 自決權에 依한 統獨意志(西獨政府 公翰) 등을 包含하고 있다.

註 16) : 國土統一院, 東西獨 交流現況, 1980.8.22, (調查研究室長, 院內 資料) 參照. 其他 註 15)의 資料 參照.

同年 12月 締結된 獨·「폴란드」條約도 비슷한 內容을 列挙하고 있다.

이 兩條約의 締結로써 中間 西獨의 對東歐外交 및 東獨과의 基本條約協商에 對한 소聯의 拒否가 除去되었으며 「베르린」協定の 推進을 容易하게 하였다.

## 2. 4大強國間 「베르린」協定

70年末 소聯의 態度가 緩和됨에 따라 4大強國間 「베르린」 通行 및 地位의 解決을 內容으로 하는 協商은 急進展하여 71年 9月 이에 關한 協定이 締結되었으며 이에 따라 西獨-西「베르린」, 西「베르린」-東獨, 그리고 西獨-東獨間 協定이 調印, 72年 6月부터 發効하였다.

同 協定の 重要內容은 ① 西獨-西「베르린」間 民間人 및 民需貨物에 對한 通過 保障, ② 西「베르린」이 西獨에 屬하지는 않으나 現存 關係의 持續 및 西獨에 對한 領事業務의 代行, ③ 西「베르린」 市民의 東獨訪問 保障, 그리고 ④ 貿易去來의 增大 等이다.

## 3. 東西獨 首相會談 및 基本條約 締結

「브란트」의 執政과 함께 新東方政策이 公表되자 69年 12月 「울브리히트」는 相互 國際法上 承認 및 同時 UN加入 等を

內容으로 하는 條約의 締結을 西獨政府에 公式 要請하여 왔다.

이에 西獨政府는 兩獨 首相會談을 提案하였으며 數次의 予備會談을 거친 後 70年 3月 및 5月 兩次에 걸쳐 「에어푸르트」와 「캄셀」에서 各各 首相會談이 實現되었다.

이 會談에서는 特히 相互 國際法上의 國家承認 및 外交關係에 있어 同等待遇를 要求하는 東獨側案이 前述한 「브란트」의 提案과 顯隔한 差異를 보였음은 勿論 兩獨間 相反된 見解를 나타내는 部分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兩獨은 各種 聲明書를 통한 立場의 調整, 關係長官 및 實務者間 接觸에 依하여 꾸준히 對話를 繼續하였으며 소聯을 비롯한 4大國의 仲裁로 72年 11月 드디어 基本條約이 假調印되었다. 同 條約은 批准過程을 거쳐 73年 6月부터 發効하였다.

全文 10條로 構成된 同 條約은 于先 前文에서 「國家的 次元의 問題를 包含한 兩獨間 基本問題에 對하여 相互 見解差」가 있음을 是認하고는 있으나 妥協을 通하여 結果적으로 兩獨 接近을 위한 充分한 基礎를 마련하고 있다.

主要内容은 다음과 같다.

- 가) 同等原則에 立脚한 相互 善隣關係의 發展
- 나) UN憲章의 目的과 原則의 尊重
- 다) 武力使用 및 威脅의 節制, 國境 不可侵性 確認
- 라) 相互間 國際的인 相對地域 代表權의 否認
- 마) 「유럽」안보 및 平和의 維持를 爲한 共同努力

바) 相互 領土內 主權制限

사) 經濟, 文化를 비롯한 各部門 交流 擴大

아) 常駐代表部 交換

자) 基本條約과 兩獨 對外條約의 兩立性 保障

以上 가) 및 다) 등이 東獨의 主張을 反映한다면 大使館이 아닌 代表部の 設置는, 비록 實質的인 國家承認이기는 하나 國際法上 待遇에 立脚하지는 않는다는 西獨의 立場을 代辯해 준다.

西獨의 基本條約 締結에 따르는 對東獨 政策의 功過는 여러 側面에서, 또 主觀的인 評價에 依하여 論議될 수 있으나 分斷 獨逸의 固定化를 公式的으로 認定하였다는 點에는 異議가 있을 수 없다. 비록 西獨政府는 「一民族內 二國家論」을 主張하고 國內法에 依拠하여 統合된 獨逸內部에 存在하는 2個의 下部組織間 相互 實體의 承認이라는 理論的 背景을 展開하나 兩獨間 存在하는 異質性은 境遇에 따라 二國間의 差異 以上이며 基本條約의 實現은 이를 다시 한번 客觀的으로 立証하고 있다.

그러나 2個의 獨逸은 儼然히 別個의 實體로 存立하고 있으며 武力은 勿論 平和的인 方法에 依하여 統一이 不可能하고 또 雙方의 主張이 平行하여 어떤 結論을 얻을 수 없을 때 對話없는 分斷 狀態는 持續될 수 밖에 없다. 結局 現實을 認定하고 相互 協商 및 交流의 擴大를 통한 接近을 試圖함으로써 民族의 單一性을 保存토록 努力하고 統一을 期할 수 있는 國內外的 與件의 成熟을 期待하는 것이 보다 賢明한 判斷이라고도 생각된다.

#### 4. 正常關係의 發展

基本條約의 締結 및 發効는 兩獨間 接近을 急速히 發展시켰으며 特殊한 條件으로 因하여 이를 爲한 各種 協定의 實現을 容易하게 하였다.

이미 73年 11月 兩獨이 同時에 UN에 加入하였으며 同 條約 8條의 規定에 따라 74年 6月 相互 常駐代表部를 設置하였다. 그後 78~80年에 걸쳐 交通·財政協定, 國境協定 및 長期貿易協定 등이 締結되었으며 經濟·技術協力を 爲한 協商이 活潑히 進行되는 段階에 이르렀다.

## 第2章 經濟 去來

### 第1節 沿革

兩獨間 經濟去來는 分斷 初期부터 始作되었다. 即 獨逸이 하나  
의 統一國家를 形成하는데 1834年 設立된 獨逸 關稅同盟<sup>17)</sup>이  
決定的인 寄與를 함으로써 1970年代 獨逸聯邦國家(Reich)의 誕  
生에 있어서 母體가 되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따라서 1834年  
以來 비록 形態를 달리하고 그 規模에 있어서 差異는 있으나 終  
戰 卽後 극히 짧은 期間을 除外하고는 獨逸內 貿易의 自由化 狀  
態가 繼續되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5年 5月 「나치」獨逸의 降伏과 함께 一時 兩獨間 貿易이  
中斷되었으나 同年 8月 「포츠담」宣言에 依하여 獨逸 全域을 하  
나의 單一經濟圈으로 간주하게 되었으며 「占領地域間 貿易」에 合  
意하였다. 19) 20)

註17): 例로 W. D. Henderson, The Zollverein, Cambridge, 1939. 參照.

18): 많은 學者. 特히 「유럽」聯邦主義者들은 Zollverein의 例를  
들어 經濟統合은 機能主義的 接近에 依하여 政治統合에 이르는  
가장 重要한 첫 段階라고 主張하고 있다.

19): 「포츠담」宣言, 第2部, B, 第14項.

20): 美·소 占領地域間 「다이슨」事業(Dyson Geschäft), 英·소  
間 영국事業(Briten Geschäft) 및 仏·소間 「소프라」事業  
(Sofra Geschäft)가 推進된 것도 바로 이 期間(46~47)  
中이었다.

47年 1月 「민덴」協定을 契機로 西方 三國의 占領地域이 單一의 經濟·行政地域으로 統攝되어 소聯 占領地域과 貿易去來가 行해졌으며 48年 6月 兩獨內 通貨改革, 그리고 49年 政府 樹立後 兩獨 「마르크」貨 地域間 「프랑크푸르트」協定이 締結됨으로써 貿易去來가 本軌道에 올랐다.

50年 「콜레協定」<sup>21)</sup>, 送電合意, 石炭協定 및 用役提供 合意 등이 이루어졌으나 東西獨間 貿易去來에 있어서 基礎를 이루는 것은 51年 7月 締結된 「베르린」協定이며 同協定은 60年 8月 修正된 後 現在까지 有效하고 있다.

51年 「베르린」協定の 公式 名稱은 「獨逸 마르크貨 流通地域과 獨逸 發券銀行 流通地域間의 貿易에 關한 協定」<sup>22)</sup>으로서 去來品目 및 用役去來는 勿論 決濟方法, 清算去來의 性格 그리고 貿易担当 機關等を 廣範圍하게 規定하고 있다.

「베르린」協定 締結 以後 經濟去來의 發展과 關聯된 重要 日誌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註21): 소聯과 西方側 占領地域間 갈탄 및 「코크스」 去來에 關한 合意.

22): 이러한 名稱은 國家承認의 效果를 피하기 위한 趣旨로 採択 되었다.



<表 1> 兩獨間 經濟去來 擴大를 위한 重要 合意 略史

名 稱	年 月 日	對 象
○ 計定設置 및 清算支払 合意	1951. 7. 10	計定開發과 清算支払에 관한 節次 合意
○ 「에너지」 供給 및 關聯 用役代金 清算方法 合意	1951. 9. 20	兩獨 銀行間 遂行節次에 관한 合意
○ 用役去來 및 委託販賣所 設置合意	1954. 6. 26	西獨 經濟相의 細部指針에 관한 發表
○ 映画 上映權 合意	1957. 2. 23	西獨 經濟相 發表
○ 貿易協定	1957. 11. 14	重工業, 輕工業 및 生必品으로 分類하여 對象品目を 選定
○ 計定開設, 支払清算 合意	1957. 11. 14	兩獨 銀行間 合意
○ 鐵道運送事故 取扱에 관한 公示	1958. 1. 29	損害賠償支払에 관한 指針 設定
○ 鐵道, 自動車 損害保險 支給 節次 合意	1959. 5. 25	損害賠償 保險金 支給에 관한 指針 設定
○ 貿易協定 無期限 延長 合意	1960. 12. 19	西獨에 대한 東獨의 要請

名 称	年 月 日	对 象
○ 貿易協定 延長 合意	1961. 1. 31	
○ 交易時 車輛通行 許可 合意	1961. 2. 18	西「베르린」-西獨間 東獨地域 通過 車輛에 發給한 西獨 關稅 庁 認可証 認定
○ 通過貿易 合意	1961. 8. 28	兩獨 銀行을 비롯한 關稅 部署 間 合意
○ 貿易 總計定上 清算方法 合意	1963. 6. 30	東獨側의 入超 現象을 支援하기 위한 目的. 貿易限度制의 撤廢 및 物品「리스트」提示. 總收 支 差額 西獨「마르크」에 의한 支払.
○ 貿易擴大 合意	1968. 12. 6	西獨의 對東獨 機械供給 擴大. 「스윙」 限度를 25%로 調整. 貿易去來에 따르는 通路利用 및 通信施設 使用. 自由往來 許容.
○ 貿易量 合意	1968. 12.	貿易 擴大
○ 貿易上 長期事業 保證을 위한 一般 規定 合意	1969. 4. 2	細部規則 選定
○ 貨物輸送車輛合意	1969. 9. 11	「칼리」地域 通過 貨物輸送

名 称	年 月 日	对 象
○ 信用貸付 増額 合意	1970. 5.	西独의 对東独 「스윙」限度 拡 大
○ 交通, 財政協定 締結	1978. 11.	
○ 長期貿易協定締結	1979. 9.	
○ 貿易 및 經濟· 技術協力 擴大協商	1980. 4 以後	

<資料> 国土統一院, 東西独接近過程研究, 국통조 78-3-1402,  
P. 11 以下, 同 東西独交流現況, 1980. 8. 22.

## 第 2 節 遂行「메카니즘」

### 1. 去來의 性格 및 当事者

「베르린」協定の 名称이 말하여 주듯이 兩独間 貿易은 内独貿易의 形態를 取하고 있는데 經濟體制가 전혀 相異한 地域間의 去來라는 点에서 国内貿易도 아닌 特殊한 (sui generis) 性格을 띤다. 初期 兩独 政府間 協商이라는 印象을 주지 않기 위하여 東独側이 「对内外貿易省」의 代表를 派遣한데 反하여 西独의 경우 「經濟省」内 工業局의 所管下에 있으며 實際로는 西「베르린」駐在 「地域間 貿易信託所」가 이를 担当하고 있다. 또 「베르린」協定 調印에 있어서도 双方 代表는 「政府를 代

表하여」라는 文句 代身 「通貨地域을 代表하여」라는 表現이 使用되었다.

이러한 獨特한 形態가 西獨政府의 東獨을 承認할 수 없다는 強硬한 立場을 反映하고 있음은 勿論 이거니와 「본」側은 對東獨 貿易去來를 部分的으로는 政治的 協商權의 優位確保 및 「베르린」 統合을 위한 壓力 手段으로 利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反面 東獨은 對西獨 貿易을 外國貿易으로 看做함으로써 間接的으로 國際法上的 國家承認까지를 意味할 수 있으며 經濟的 實利는 勿論 이를 對西方 經濟通路로 活用하여 地位의 向上을 圖謀하려는 意圖를 갖고 있다.

對東獨貿易에 있어서 西獨의 이러한 留保的 立場은 EEC 諸國에 依하여 公式的으로 認定받고 있다. 即 「로마」條約 附則<sup>23)</sup>은 同條約 規定의 適用對象地域으로서 「獨逸聯邦共和國과 이 共和國의 法令이 미치지 못하는 獨逸領土」로 擴大하고 있다. 이는 西獨을 唯一한 合法政府로 取扱하여 東獨과의 貿易을 獨逸內 貿易으로 看做한다는 積極的인 支持를 意味할 뿐만 아니라 實際로 兩獨間 貿易의 自由化, 나아가 東獨의 對EEC 輸出에 對한 市場의 開放까지를 許容하는 結果를 가져 올 수도 있다. 한 例로

註23): 「로마」條約, II, § 3, Protocole relatif au Commerce intérieur allemand et aux problèmes connexes.

「로마」條約에 따르면 24) 所定の 節次를 걸쳐 일단 한 會員國에 輸入된 商品은 域内에서 生産된 商品과 同等한 地位를 누려므로 東獨 商品은 結局 EEC市場内에서 自由로이 流通될 수 있기 때문이다. 25)

經濟体制의 異質性 및 兩獨의 特殊한 條件으로 因하여 貿易은 協定에서 合意된 品目에 限하여 行해진다.

市場經濟体制를 択하고 있는 西獨에 있어서 對東獨 去來는 關心 輸出入業者에 依하여 自由로이 이루어지나 兩獨間 協約에 따른 貿易이라는 點에서 制約을 받는다. 原則적으로 許可制이나 1969年 「地域間 交易施行規定」의 採択과 함께 節次가 크게 緩和되어 購入 및 販賣에 있어서 申告제도 同時에 併行되어 오고 있다. 政府는 對東獨 貿易 可能 品目を 官報에 公知하는데 大部分의 경우 數量, 金額 및 價格이 明示된다. 購入, 販賣 및 運送 等に 있어서 경우에 따라 許可 또는 申告가 必要하다.

反面 貿易이 國家獨占下에 있는 東獨에 있어서는 「對内外 貿易省」의 徹底한 計劃에 따라 進行된다.

具體的으로는 同省의 傘下에 있는 國營貿易公社, 獨逸域内外貿易 機構, 有限会社 形態의 商事会社, 또는 國營大企業 및 人民企業協

註 24): 「로마」條約 第9 ~ 10條.

25): 이러한 間接的인 貿易迂迴 (Trade deflection) 를 防止하기 위하여 各 會員國은 必要한 措置를 取할 수 있다. (「로마」條約, II, § 3, 2 ~ 3.)

會 等에 依하여 去來 性質에 따라 分担, 遂行된다.

國營 또는 公營 形態의 이들 企業은 「對內外 貿易省」의 計劃, 指針에 따라 貿易을 行하는데 對外的으로 西獨企業과의 契約 締結 當事者가 됨은 勿論 國家機關으로서의 資格도 갖추어 去來 許可書, 代金支給許可書 및 商品運送許可証도 發給한다. 이 企業들이 對西獨 貿易去來 規模와 品目的 選定等を 決定함은 勿論이다.

## 2. 支払 및 決済

貿易規模 및 對象品目 「카테고리」等은 協定에 詳細히 規定되는데 決済는 西獨 聯邦銀行을 一方으로 그리고 東獨 中央銀行을 他方으로 하는 (1971年 1月 以後 東西國立銀行으로 稱함) 兩銀行內 清算計定 (Clearing Account) 의 設置를 通하여 이루어진다. 即 兩國 中央銀行內 設置된 相對國과의 清算計定에 去來의 進行에 따라 清算單位로 表示된 貸借의 內容이 各各 帳簿에 記錄된다.

一般的인 東西貿易의 慣例대로<sup>26)</sup> 兩獨間 貿易은 原則적으로 每年 均衡을 維持하므로 収支差에 따르는 實際 支払問題는 發生하지 않는다. 그러나 現實的으로는 貿易의 擴大와 함께 恒常

註 26) : 東西貿易의 遂行「메카니즘」에 關하여는 J. Wilczynski, The Economics and Politics of East-West Trade, Praeger, 1969, 參照.

輸出入이 반드시 均衡을 이룰 수 안은 없는데 이러한 경우 두 가지 方法으로 補完되고 있다. 卽 63年의 合意에 따라 總收支 差額은 西獨「마르크」貨(DM)로 支払할 수 있게 되었는데 同 通貨가 그만큼 國際的으로 價值가 保障되기 때문이다. 다음 兩獨間 經濟力의 差異로 因하여 東獨側의 入超는 不可避하였으며 또 西獨側에서 본다면 東獨과의 貿易에 있어서 經濟的 利益도 重要하나 보다 政治·社會的 考慮가 크게 作用함으로 收支 差額에 대하여는 一定限度의 範圍內에서 清算信用(Swing)을 供與하고 있다. 68年 12月 兩獨間 貿易擴大會議에서는 相互 供給의 急速한 增加를 目的으로 西獨은 東獨의 前年對比 供給額 25% 內에서 無利子 産業財政援助를 提供하기로 決定함으로써 同 Swing 限度를 擴大하였다.

한편 49年 「프랑크푸르트」協定の 締結과 함께 去來에 있어서 兩獨間 通貨價值를 1:1로 定하되 이를 基礎로 한 새로운 清算單位 VE (Verrechnungs einbeit)를 創出하기로 合意하였다. 따라서 關聯業者들은 自國內 銀行을 通하여 該當 金額을 自國通貨로 支給하거나 弁濟받게 된다.

西獨과 西「베르린」에 있어서는 모든 商業銀行이 決済業務를 行하고 있는데 反하여 東獨의 경우 國立銀行, 「베르린」市金庫, 「베르린」人民銀行과 東獨貿易銀行만이 兩獨間 清算去來取扱銀行의 役割을 担当하고 있다. 그러나 清算計定上 貸借 變動에 對한 相互 通知는 西獨 聯邦銀行과 東獨 國立銀行의 權限에 屬하며

이들은 自国内 業者의 去來銀行을 通하여 決濟한다. 27)

비록 共通清算 單位인 VE가 設定되었으나 實際 通貨價値의 變動에 따르는 問題가 있을 수 있다. 特히 市場經濟體制를 扞하고 있는 西獨市場內 價格은 需給에 依하여 決定되며 生産要素의 회소성을 反映하는 反面 東獨에 있어서는 價格은 原則적으로 勞動價値에 依하여 設定되나 實際로는 價格委員會가 經濟計劃의 目標, 相異한 社会「그룹」間 國民所得의 配分 및 貯蓄水準 등을 考慮하여 任意的으로 定한다. 28)

이와같이 異質的인 經濟體制로 因한 通貨價値 또는 價格體系의 相異를 解決하기 위하여 兩獨間 去來에 있어서 價格은 西獨「마르크」貨 地域內 物價를 基準으로 하고 있다. 實質적으로 西獨의 通貨價値(DM)에 따라 東獨의 通貨價値(RM)가 變動하고 있음을 意味한다.

한편 用役去來에 있어서는 一部 51年の 「베르린」協定에 依하여 規定되고 있으며 그 以外 個別的으로 處理되는데 大部分 決濟는 清算計定을 通하여 行해진다. 29)

註 27) : 日本經濟調查協議會, 東西ドイツ間の經濟關係, 1978.3, P.33  
以下.

28) : J. Wilczinski, Profit, Risk and Incentives under  
Socialist Economic Planning, No Nillan, 1973, P.81  
以下 參照.

29) : 國土統一院, 東西獨 經濟交流 事例研究, 1974.7, P.35 以下.



또 非商業用 物品去來는 30) 基本條約의 追加議定書에 規定되고 있는데 73年 6月 同條約의 發効와 함께 東獨의 讓步로 크게 緩和되었다.

끝으로 다음과 같은 去來에 있어서는 清算計定에 包含되지 않으며 別途의 特別規定에 依拠하여 運營되고 있다.

가. 加工<sup>貨</sup>의 決濟를 商品의 販賣에 依하도록 許可하고 있는 加工契約

나. 東獨國立鐵道와 西獨聯邦鐵道間 運<sup>貨</sup>決定

다. 大型「버스」交通에 있어서의 用役去來

라. 水路交通에 있어서의 「도르트문트」와 「함부르크」에 있는 清算決濟所를 통한 決濟

마. 西獨에 滯留하고 있는 東獨 技術者에 對한 現金 支給

바. 映画 「로얄티」와 映画 「필름」의 交換

사. 동물원間 산 動物의 交換

아. 郵票의 交換

자. 印刷物의 購入과 販賣 및 印刷交換 計劃에 따른 印刷의 委託

---

註 30) : 例로 소화물과 膳物用 郵便小包의 託送, 旅行中 膳物의 攜帶 및 이삿짐과 相統物의 運送 等

### 第3節 去采의 發展

#### 1. 經濟的 与件

戰後 東西獨은 相反되는 政治·經濟體制가 樹立되었음은 勿論 然히 다른 經濟的 与件下에서 出發하였다.

西獨이 「오데르·나이제」江 以東地域의 喪失로 因한 農産物 供給源의 中斷, 東獨의 分離에 따르는 一部 工產品 및 鉸物의 供給 禁止, 戰爭으로 因한 工業生産施設의 破壞 및 東獨으로부터 의 大量 難民 流入 等 허다한 難關에 逢着하였던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西獨經濟가 不利한 与件에 屢해 있지만은 않았으며 48年 通貨改革 以後 急速한 經濟發展의 實現에 寄与한 여러 要素들 또한 輕視할 수는 없다. 우선 東獨으로 부터의 難民 流入이 西獨經濟에 負擔을 주기도 하였으나 反對로 當時 必要한 勞動力을 供給함으로써 經濟 復旧 期間中 낮은 賃金의 維持를 可能케 하였고, 또 企業間 競争을 刺戟시켰다는 点에서 肯定的인 役割을 提供했다고 評價된다.<sup>31)</sup> 다음 비록 戰爭으로 因하여 生産施設이 破壞되었다고는 하나 1948年 以後 高度成長을 可能케 하는 資本 및 技術 蓄積을 潛在하고 있었다. 1936年에 比할 때 이미 1946年에 보다 工業生産施設을 갖추었으며 「나

(31): 例로 G. Denton et. al., 'Economic Planning and Policies in Britain, France and Germany', G. Allen & Unwin, 1969. P.51에서도 同一한 意見이 記載되고 있음.

치」治下에서 投資가 戰爭指向的이기는 하였으나 何等の 追加費用 없이 一般工業 生産으로 轉向할 수 있었다고 한다. 32)

그 以外에도 防衛와 같은 軍事費 負擔의 輕減 33), 重点 投資 對象部門(自動車, 化學製品, 機械 및 電氣機器類 等)의 效率的인 選定 34) 그리고 「마셜·플랜」에 依한 美國의 大規模 援助 提供 35) 等도 西獨의 經濟發展을 促進시키는 要素로 作用하였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西獨經濟로 하여금 西歐內 第1의 經濟先進國으로 浮刻시키고 나아가 70年代 資源波動과 잇다른 國際景氣의 不況 및 沈滯에도 不拘하고 持續的인 成長, 經濟安定 및 國際收支의 好調를 維持케 할 수 있었던 根本的인 要因은

---

註32): K. W. Roskamp, Capital Formation in West Germany, Wayne State Univ. Press, 1965, P. 36.

33): 한 例로 58年 GNP에 대한 軍事費 支出의 構成比는 2.7%에 位置하여 다른 先進諸國에 比할 수 없을 程度였다.

34): 이러한 部門에 있어서는 大部分 높은 生産性의 實現이 可能할 뿐만 아니라 또 戰後 國際需要의 急速한 增加로 因하여 西獨의 輸出市場 擴大가 가장 顯著한 部門들로서 그만큼 規模의 經濟效果를 얻을 수가 있었다.

35): 한 例로 西獨은 戰後부터 1952년까지 美國으로부터 總規模 3,550 百萬「달러」에 達하는 莫大한 財政援助를 받았는데, 其中 「마셜·플랜」에 依한 援助는 1,280 百萬「달러」였다. H. C. Wallis, Mainsprings of the German Revival, Yale Univ. Press, P. 363.

適切한 經濟哲學의 基盤 確立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政策基調의 遂行으로 要約된다. Müller-Armack 教授에 依하여 代表되는 社会市場經濟는<sup>36)</sup> W. Eucken 및 F. Böhm 流의 市場「메카니즘」의 長点を 極大化하는 所謂 新自由主義와 이를 補完 내지는 相互 「포지티브·섬」(Positive-sum) 効果를 가져 올 수 있는 広範圍한 社会福祉政策에 基礎하고 있다.<sup>37)</sup> 이에 따라 「라인」江의 奇蹟은 勿論 오늘날 西獨의 經濟繁榮을 實現할 수 있는 基盤은 이미 50年代 中盤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反面 經濟体制는 차치하고 經濟的인 与件만을 比較하더라도 西獨과는 對照的으로 東獨은 매우 不利한 立場에 있었다. 우선 面積에 있어서 半에도 채 未達하며<sup>38)</sup> 人口 역시 東獨 人口는 西獨 人口의 約 27% 内外<sup>39)</sup>에 不過한데 더하여 資源面에

註 36) : Müller-Armack, The Social Market Economy, German Economic Review, 1965 vol. 3, No 2.

37) : W. Eucken, Die Grundlagen der Nationalökonomie, Goedesberg, Küpper, 1947 (訳書 T. W. Hutchism, The Foundations of Economics, Edinbwgh, Hodge, 1950)

38) : 78年 現在 西獨 面積은 248,577 km<sup>2</sup>인데 反하여 東獨 面積은 108,178 km<sup>2</sup>에 지나지 않는다. 資料, UN Statistical Yearbook, 1978.

39) : 人口比較 (78年末 現在)

西獨 : 61,310 千名. 東獨 : 16,951 千名

있어서도 資本蓄積, 技術 및 原資材 等 比較가 안 될 程度였다. 40) 西獨에 比하여 東獨의 경우 戰爭으로 因한 産業施設의 破壞 程度가 極甚 하였으며 西方과는 對照的으로 소聯에 對한 戰爭 損害賠償金 (664 億 R M) 을 支給한 以外에도 當時 産業施設의 約 半 (50 億 R M) 을 同國에 반출하였다. 또 一般的으로 社會主義 經濟體制가 갖는 特히 政體적인 側面에서의 資源配分の 非效率性도 東獨의 經濟發展에 크게 阻障을 招來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獨逸人 나름대로의 勤勉性을 主內容으로 하는 人的 資源의 肯定的인 寄與, 對西獨 競爭의 意識 및 높은 投資率의 維持 等은 東獨으로 하여금 成功的인 經濟計劃의 遂行을 可能케 하였고 東歐內에서 首位의 經濟圈에 位置하게 하는 結果를 가져왔다. 41) 한 例로 높은 投資率을 持續함으로써 50 年代 以後 東獨의 年平均 經濟成長率은 4.5% 內外, 그리고 工業生産의 伸長率은 平均 6%를 上廻하였으며 76~80 年間 5 個年 計劃에 있어서 年平均 成長率은 約 5.3%로 予定되고 있다. 42)

註40): 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andbook of Economy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Reinhard Pohled), Saxon House, 1977, P. 17 以下 參照.

41): 同上, P. 39 以下 參照.

42): 詳細한 內容은 海外經濟研究所, 世界經濟總覽, 東獨編, 1977: World Economic Information Services, ARCレポート總集, 東ドイツ國民經濟, 世界經濟情報サービス, 1976~79 參照: 北村 次一, 近現代のドイツ經濟社會, 法律文化社, 1978.

이러한 努力의 德沢으로 東独은 急速한 工業發展을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表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産業構造上 特化 (specialization-)의 심화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即 電力, 金屬, 食料品 및 纖維類의 構成比가 下落하는 反面 化學部門과 電子製品을 包含하는 機器類의 生産規模는 急速히 擴大되고 있다.

<表 2>

東 独 의 産 業 構 造

( GDP 基準, 構成比 % )

	1936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電 力	9.0	11.7	8.3	6.8	6.4	5.6	5.1
化 學	6.4	11.2	12.0	12.1	13.5	14.5	15.1
金 屬	10.5	6.2	8.8	8.4	7.8	7.8	7.9
建 設 資 材	2.6	2.3	1.7	2.0	2.1	2.1	2.0
機 器 類	16.1	17.4	19.1	22.1	24.1	24.9	24.2
電 子 製 品	2.7	4.4	5.1	6.8	8.2	9.5	11.2
輕 工 業	13.6	14.7	12.4	12.0	11.3	11.2	11.3
纖 維 類	10.6	10.2	9.6	8.8	7.6	7.0	6.6
食 料 品	28.5	21.9	23.0	21.0	19.0	17.4	16.6
合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GDR Statistical Yearbooks : DIW Calculations.

<表3>은 東西獨間 國民生産을 對比하고 있는데 規模面에 있어서는 커다란 隔差가 있으나 人口를 勘案한다면 別로 커다란 差異를 나타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特히 東獨의 이러한 所得水準은 一人當 所得을 基準으로 하였을때 英國을 비롯한 一部 西方 先進國보다 優位에 있음을 指摘하고 싶다.

<表3> 兩獨間 GNP 對比  
(西獨 經常價格 基準)

(單位: 10億 DM)

	東		獨	西		獨
	1967	1973	1976	1967	1973	1976
産業部門別						
農林部門	8	10	10	21	27	30
製造業 및 建設	62	109	140	258	489	564
貿易·運輸	18	33	43	96	164	203
「서비스」	24	47	65	123	260	354
GDP	111	195	255	497	928	1,137
支出別						
民間消費	56	90	115	285	496	627
投資	28	53	65	113	238	250
國家消費 및 對外寄與	27	52	75	97	194	258
GNP	111	195	255	496	928	1,135

<註> 兩地域間 相異한 體制의 對比로 GDP 合計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음.

<資料> UN, Statistical Yearbook, 1978.

그러나 東獨 역시 다른 社會主義諸國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經濟計劃의 遂行을 위하여는 資本·施設財의 導入이 不可避하며 結局 對西方 先進國 輸入을 擴大하지 않을 수 없는 立場에 있다.

<表 4~5>는 이러한 趨勢를 나타내고 있는데 初期 소聯을 위시한 COMECON 諸國에 對한 依存度가 높았으나 점차 西方 工業 先進諸國과의 貿易이 擴大되고 있다.

<表 4> 東獨의 地域別·國別 貿易構造 (構成比 %)

	1961* ~ 65'	1966* ~ 70	1971* ~ 75	1973	1974	1975
	輸 入					
社 會 主 義 諸 國	76.0	72.2	65.0	64.5	60.2	66.6
COMECON 諸 國	71.7	68.4	62.1	62.1	57.5	63.5
소 聯	47.4	42.3	33.9	31.6	30.2	35.8
체 코	9.4	9.4	8.6	8.6	7.5	8.5
폴 렌 드	4.9	5.8	7.5	8.2	7.2	8.5
其 他	4.3	3.8	2.9	2.4	2.7	3.1
其 他 諸 國	24.0	27.8	35.0	35.5	39.8	33.4
西方工業先進諸國	20.1	23.9	30.9	32.5	34.2	29.0
西 獨	9.0	10.2	9.4	8.9	8.9	8.4
後 進 諸 國	3.9	3.9	4.1	3.0	5.6	4.4



	1961* ~ 65	1966* ~ 70	1971* ~ 75	1973	1974	1975
	輸 出					
社 会 主 義 諸 国	76.9	74.6	72.7	73.2	68.4	73.2
COMECON 諸 国	72.9	69.3	68.9	70.0	64.8	69.3
ソ 聯	44.7	39.9	36.6	37.8	32.7	35.5
체 코	9.1	9.8	9.8	10.1	10.0	10.2
폴 랜 드	8.9	8.2	9.3	9.8	8.7	9.4
其 他	4.0	5.3	3.8	3.2	3.6	3.9
其 他 諸 国	23.1	25.4	27.3	26.8	31.6	26.8
西 方 工 業 先 進 諸 国	19.0	20.8	23.2	23.0	27.4	22.4
西 独	9.3	9.1	9.5	9.5	9.9	9.1
後 進 諸 国	4.1	4.6	4.1	3.8	4.2	4.4

<註> 年平均

<資料> <表2>와 同

<表 5>

東独의 品目別 貿易構造

(構成比 %)

	1960	1970	1973	1974	1975	1976
輸 入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機器類 (運送機器包含)	12.7	34.2	33.0	30.3	30.8	31.5
燃料, 鉱物類 및 金屬類	38.5	27.6	24.4	26.8	30.5	28.9
其他 原資材 및 食料	39.2	28.1	24.7	24.7	22.6	24.9
消 費 財	5.3	4.5	8.4	6.6	5.6	4.8
化学製品 및 建設資材	4.3	5.6	9.5	11.6	10.5	9.9
輸 出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機器類 (運送機器包含)	49.0	51.7	51.4	43.2	50.7	51.2
燃料, 鉱物類 및 金屬類	15.7	10.1	10.8	14.2	12.1	11.3
其他 原資材 및 食料	5.9	7.4	9.0	9.3	9.1	10.4
消 費 財	15.1	20.2	17.1	16.2	15.6	14.4
化学製品 및 建設資材	14.3	10.6	11.7	12.1	12.5	12.7

<資料> Statistisches Taschenbuch der DDR 1977.

前者가 東独의 貿易에서 차지하는 構成比는 60年代 中盤 以後 輸出에 있어서 큰 變動이 없는데 反하여 輸入의 경우 擴大의 傾向을 보인다.

品目別로 본다면 東独은 機器類 輸出国인 同時에 輸入国인데

그 以外 燃料를 비롯한 鉱物類 및 原資材의 輸入이 絶對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2. 東西獨間 去來

結局 以上에서 살핀 東獨의 輸入需要는 經濟的 實利라는 側面에서 兩獨間 貿易去來의 急速한 發展을 가져왔다. 特히 基本條約의 發効 以後 同條約 附屬文書 第7條의 規定에 따라 貿易의 擴大는 물론 構造의 改善까지 試圖되고 있는데 79~80年 總規模는 各各 90億DM 및 100億DM으로 合意된 바 있다. (<表 5> 參照) 43)

<表 6>

東西獨 貿易規模

(單位：百萬DM)

	西 獨 輸 入	兩 獨 輸 出 (東 獨 輸 入)	總 額
1950	414.6	330.0	744.6
1955	587.9	562.6	1,150.5
1960	1,122.4	959.5	2,082.0
1965	1,260.4	1,206.1	2,466.5
1970	1,996.0	2,415.5	4,441.5
1971	2,319	2,499	4,818

註 43) : 日本經濟調查協會, 東西ドイツ間の 經濟關係, P.11 以下.

	西 独 輸 入	西 独 輸 出 ( 東 独 輸 入 )	總 額
1972	2,381	2,927	5,308
1973	2,660	2,998	5,658
1974	3,252	3,671	6,923
1975	3,342.3	3,921.5	7,263.8
1976	3,876.7	4,268.7	8,145.4
1977	3,960.4	4,343.3	8,303.8
1978	3,899.9	4,523.9	8,423.8
1979(1~10月)	3,612.2	3,707.4	7,319.6

<資料> Federal Office of Statistics, Fachserie F. Reihe 6.

이와같은 貿易規模가 總 對外貿易에서 차지하는 構成比를 對比하면 西独에 있어서는 2% 미만으로 부수적인(residual) 性格에 지나지 않으나 東独의 경우 9%를 上廻하며 向後 10%에 이를 것으로 展望된다. <表4>에서도 볼 수 있듯이 東独의 對外貿易에서 西独은 輸入에 있어서는 소聯 다음의 第2位, 輸出에 있어서는 소聯, 「체코」에 이어 第3位를 各各 차지하고 있다.

<表7> 및 <表8>은 東西独間 部門別 貿易構造를 要約하고 있다.

一見하여 兩側의 去來에 있어 基礎 資材 및 生産財가 絶對的

<表7> 西独의 对東独 輸出

	1961* ~ 65	1966* ~ 70	1971* ~ 75	1973	1974	1975	1976
	百万 D M						
總 額	989	1,844	3,203	2,998	3,671	3,922	4,269
西「베르린」	51	125	207	203	255	288	350
	構成比 (%)						
基礎資材 및 生産財	56.6	51.8	53.8	47.6	57.9	60.1	53.5
鐵 鋼 製 品	29.5	16.0	12.8	12.2	15.6	14.2	12.2
化 学 製 品	16.8	21.3	23.2	23.1	25.4	23.8	21.3
非 鐵 金 属	3.0	9.1	8.6	4.3	9.7	8.5	5.0
資 本 財	17.3	22.8	23.8	28.6	21.8	22.7	28.9
機 器 類	11.1	16.4	17.3	21.2	15.6	15.3	20.2
消 費 財	7.3	8.3	9.5	10.5	9.8	7.4	7.5
農産物 및 同製品	18.5	16.5	11.7	12.2	9.6	8.5	8.9
合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西「베르린」	5.2	6.8	6.5	6.8	6.9	7.3	8.2

<註> 年平均

<資料> <表5>와 同

<表 8>

東独의 对西独 輸出

	1961 ~ 65	1966 ~ 70	1971 ~ 75	1973	1974	1975	1976
百万 D M							
總 額	1,033	1,540	2,791	2,660	3,252	3,342	3,877
西「베르린」	206	334	673	708	803	864	1,039
構成比(%)							
基礎資材 및 生産財	51.0	30.9	38.9	38.3	43.7	39.0	42.4
鐵 鋼 製 品	0.9	4.7	7.7	6.1	9.0	8.0	7.1
鉍 物 製 品	22.7	8.1	3.4	3.3	3.5	2.7	3.0
鉍 物 類 製 品	14.3	2.9	9.8	10.2	13.7	13.2	15.2
化 学 製 品	7.8	8.3	9.0	9.4	9.4	9.3	10.0
資 本 財	10.5	13.6	10.7	9.7	9.7	9.9	10.5
機 器 類	5.9	5.8	3.5	3.2	3.4	2.7	3.5
消 費 財	22.0	29.4	30.6	28.7	29.0	31.6	29.3
織 維 類	10.1	10.4	10.5	10.3	9.9	10.5	11.0
衣 類	4.8	8.3	8.7	7.4	8.9	9.6	8.4
木 材 類	1.6	4.2	4.9	4.7	4.5	5.2	3.8
農産物 및 同製品	16.2	25.6	19.5	22.7	17.1	18.0	17.2
合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西「베르린」	19.9	21.7	24.1	28.6	24.7	25.8	26.8

<註> 및 <資料> <表 5>와 同

인 比重을 차지하여 水平分業의 現象을 보이는 것 같으나 東獨의 輸出中 纖維類를 비롯한 消費財 역시 主宗을 이루는 反面 西獨은 주로 化學製品 및 機器類를 輸出하고 있다. 基本的으로 76年 金額을 基準한다면 東獨 輸出에 있어서 우선 順位는 外衣 (327 百萬 DM), 綸물衣 (198 百萬 DM), 木製類 (148 百萬 DM) 等이며 西獨의 경우 食料品 製造機 (217 百萬 DM), 金屬機械 (198 百萬 DM), 纖維類 (141 百萬 DM), 電氣 機械 (128 百萬 DM) 및 合性製品 (「플라스틱」 및 고무) (121 百萬 DM) 等 이다.

貿易은 물론 貿易外 去來에 있어서도 西獨은 繼續 黑字를 維持하고 있는데 그 內容은 <表9>와 같다.

<表9>

兩獨間 貿易外去來

(單位: 百萬 DM)

	1970	1973	1974	1975
西 獨 的 收 入	266	314	522	505
運 送 料	149.9	144.7	293.7	317.6
海 岸 使 用 料	5.1	28.4	21.7	4.5
「콤미손」 收 入	26.6	41.2	57.7	52.1
組 立 費 用	4.8	13.3	72.6	31.0
「라이센스」 使用料	11.9	8.0	8.6	5.2
東 獨 的 收 入	148	161	161	166
「라이센스」 使用料	2.0	6.0	10.3	8.7
其 他 收 入	42.7	98.7	107.3	117.2
西 獨 的 收 支	118	153	361	339
貿易에 대한 構成比(%)	9.4	8.4	9.9	9.2

<資料> <表5>와 同

兩獨間 貿易을 크게 制限하는 要因中의 하나로 東獨의 國際收  
支 逆潮를 들 수 있다. 44)

<表10>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東獨은 每年 貿易收支  
의 黒字를 持續하여 왔으나 73年 資源波動을 契機로 赤字로  
転向한 以來 構造的인 不均衡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立  
場은 다른 東歐諸國의 立場과 비슷하며 西獨의 경우와 극히 對  
照를 이룬다.

<表10>

東獨의 貿易收支

(單位：輸入, CIF 百萬「달러」)  
(單位：輸出, FOB " )

	1958	1963	1968	1969	1970	1971
輸 入	1,701	2,331	3,393	4,123	4,847	4,981
輸 出	1,890	2,713	3,791	4,153	4,581	5,076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輸 入	5,905	7,854	9,646	11,290	13,196	14,344
輸 出	6,184	7,521	8,748	10,088	11,361	12,024

<資料> UN, Statistical Yearbook, 1978.

이에 따라 基本條約의 締結 以後 보다 幅넓은 經濟收支 協力  
을 通하여 商業「베이스」의 貿易을 補完하려는 傾向을 나타내고

註44): 同上, P.28 以下.



있는데 75年 以後 急速한 拡大一路에 있다. 45)

또 前述한 바와 같이 清算協定の 締結과 함께 西獨은 東獨의 外貨 負擔을 덜어주고 나아가 輸入能力的 支援을 통한 貿易의 拡大를 기하기 위하여 東獨의 前年對比 供給額의 25%에 該當하는 無利子 産業財政 借款 形態의 「스윙」을 供與하여 오고 있다. 「스윙」規模 및 東獨側의 使用內容은 <表 11>과 같다.

<表 11> 西獨의 對東獨 「스윙」供給限度 및 使用規模

(單位: 百萬 DM)

	「스윙」限度	東獨의 實際使用金額
1968	200	135
1969	360	270
1970	380	387
1971	440	413
1972	585	539
1973	620	592
1974	660	519
1975	790	711
1976	850	786
1977	850	748
1978	850	677
1981	850	

<資料> <表 10>과 同

註 45) : 例로 75年 西獨의 Leonard Manheim AG와 東獨의 Asimex 間 「인스턴트·초코렛·드링크」 生産用 專門機械와 技術提供에 관한 協力を 위한 協定이 締結되었다.

그 以外 <表9>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貿易外収支에 있어서 東独은 每年 赤字狀態에 있는데 西独은 77年末 現在 65億DM에 該當하는 用役費를 負擔하여 왔다. (<表12> 參照)

<表12> 西独의 貿易에 따른 用役費 負擔

(單位：百萬DM)

	金 額
1970	413.9
1972	428.9
1974	658.7
1976	784.8
1978	908.2

<註> 運輸設備, 港口, 倉庫用役費, 博覽會 開催費 및 貿易保險等 包含.

<資料> 國土統一院, 東西独 交流 現況, 1980.8.

79年 9月 兩獨間 長期貿易協定の 締結 以外에도 80년에 들어서서 兩獨 關係 責任者의 相互 訪問과 함께 貿易增加, 無利子 財政借款(4億「달러」) 供与 및 원자로 安全技術協力を 비롯한 經濟·技術 協力の 增大를 위한 交渉이 活潑히 進行되고 있다.

### 第 3 章 重要交流에 관한 諸協定<sup>46)</sup>

過去와는 달리 通行을 비롯한 其他 交流는 60年代까지 極히 制限되었거나 아니면 公式的이고도 實質的인 交流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兩獨間 交流의 擴大를 爲한 多樣한 試圖는 꾸준히 展開되어 왔으며 70年代 「브란트」에 依한 東方政策이 可能하였던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다. 以上 70年代 初 急速히 推進되어 結實을 거둔 各種 協定을 中心으로 兩獨間 關係를 살펴보고자 한다.

#### 第 1 節 人的 往來 및 交通

##### 1. 沿革

1971年 12月 西獨-西「베르린」間 通行協定 및 西「베르린」-東獨間 通行協定, 72年 5月 東西獨 交通協定, 同年 6月 4大國 베르린協定 그리고 同年 12月 基本條約 等の 締結 以後 兩獨間 人的 往來에 對한 制限은 한층 緩和됨으로써 東西獨 關係의 正常化에 크게 寄與하였다.

註 46): 以下 前述한 國土統一院 諸 資料 및 中央情報部, 東西獨 資料集, 接觸關係, 下卷 等を 綜合하여 契約 整理하였음을 밝힌다.

事實 60年代까지만 하여도 通行이나 이를 爲한 交通手段의 利用에 對하여 東獨側은 갖가지 制限을 加하여 왔다.

한 例로 西獨 居住者의 東獨 訪問은 1寸 및 2寸에 限하여 年 1回 4週 以內에만 許容되었으며 단지 商用旅行, 「라히프치히」 見本市 訪問 및 公務上 招請 旅行 等만이 可能하였다. 한편

61年 8月 베르린 措置 以後 東獨-住民의 西獨 旅行은 禁止되었 으며 64年 11月 以後 老後 年金生活者(男 65歲 以上, 女 60歲 以上)의 年 1回 4週間 西獨 및 西「베르린」 訪問만이 許容

되어 왔다. 또 西「베르린」 常駐者의 東獨 및 東「베르린」

旅行 역시 61年 封鎖된 以來 63~5年間 新年, 성탄절 또는 부활절 等 祝祭日 期間中 親戚訪問에 限 定하였으며 66年 以後 에는 東「베르린」 當局의 許可를 前提로 緊要한 家事의 境遇에 限 定 可能하였다.

兩獨間 協商過程을 表로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表 13> 兩獨間 交涉過程

名 稱	年 月 日	合 意 內 容
○ 鐵道往來回數 增加에 關한 合意	1954. 7. 15	每日 6回 往來에서 12回로 增加
○ 第1次 通行証 約定	1963. 12. 17	西「베르린」市民 東「베르린」 親戚訪問 ( 1963. 12. 18 ~ 64. 1. 5 期間)

名 称	年 月 日	合 意 内 容
○ 「싸알레」地方 고속도로 교량재 건 合意	1964. 8. 18	費用負擔 — 西 独 工事責任 — 東 独
○ 第2次 通行証 約定	1964. 9. 24	西「베르린」市民 東独 親戚 訪問
○ 兩「베르린」人的 往來合意	1965. 2. 5	西「베르린」市民 東独 親戚 訪問 (復活節 및 聖神降臨節期間)
○ 第3次 通行証 約定	1965. 11. 25	西「베르린」市民 東独 親戚 訪問
○ 第4次 通行証 約定	1966. 3. 7	上 同
○ 緊急한 家事的 境遇 往來에 關 한 合意	1966. 10. 6	1966. 10. 10 ~ 67. 1. 31 期間中 通行証 發給
○ 相互 通行에 關한 細部問題 協議	1971. 8. 5	「바르」 西独 國務相과 「콜」東独 相間 「본」에서 會談
○ 4 大國「베르린」 協定 假調印	1971. 9. 3	「베르린」 自由通行
○ 西独 - 西「베르린」 通行協定 調印	1971. 12. 17	相互 民間人往來 및 通行証 利用

名 称	年 月 日	合 意 内 容
○ 西「베르린」- 東独通行 協定 調印	1971.12.20	西「베르린」市民 1年 1回以上, 年 30日 東独地域 旅行 許容
○ 一般 通行協定 仮調印	1972. 5.12	通行 範圍의 拡大
○ 一般 通行協定 正式 調印	1972. 5.26	東「베르린」에서 調印
○ 4 大 国 「베르린」 協定 正式調印	1972. 6. 3	西「베르린」에 對한 4 大 国 權利와 責任持統

<資 料> 註 (46) 參照

## 2. 「베르린」 通行協定

東西「베르린」 通行問題는 兩独關係는 勿論 西方側과 소聯間에 있어서도 恒時 重要한 議題로 登場하여 왔다. 特히 61年 8月 13日 東独에 依한 東「베르린」의 封鎖以後 實質적으로 往來는 거의 차단되었으며 68年 6月 東独은 西独-西「베르린」間 陸路通行에 對하여도 通行証과 査証을 新設함으로써 西「베르린」에 對한 孤立化 政策을 企圖하였다.

「베르린」을 中心으로 한 通行問題는 1971年 9月 4大 国 「베르린」協定이 仮調印되면서부터 急進展을 보았다. 同協定 条項中

旅行과 關聯하여 「東獨 領土를 通過하는 西獨과 西「베르린」間의 民間人 및 民間人 物資의 迅速하고 自由로운 往來의 保障과 西「베르린」市民은 東獨을 旅行하거나 訪問할 수 있다」는 內容이 挿入되었다. 이러한 最終議定書의 規定에 따라 同年 12月 西獨-西「베르린」間 通行協定 및 西「베르린」-東獨間 通行協定이 各各 「본」 및 東「베르린」에서 關係責任者間 調印이 交換되었다.

西獨-西「베르린」間 通行協定の 對象은 東獨領土를 經由하는 通路, 鐵道 또는 陸路를 통한 民間人 및 民間物資의 往來이다.

同協定の 重要內容은 ① 旅行者의 保護 ② 人的往來節次의 迅速 簡素化 및 緩和 ④ 交通便宜의 大幅的인 改善, 그리고 ⑤ 通行委員會의 發効에 따라 旅行中 安全이 保障되며 合同「비자」發給을 비롯한 節次의 간소화, 公式密封된 수화물의 安全輸送 및 形式的인 通過節次 等 旅行에 있어서 커다란 支障이 없게 되었다. 또 通行 協定の 遂行中 見解差의 解消 나아가 改善을 圖謀하기 爲한 目的으로 兩獨-實務者로 構成되는 通行委員會가 新設되었다.

協定の 締結은 同 通路의 利用度를 增加시켰는데 1972 ~ 79年 旅行者數가 總 1億人에 達함으로써 그 前期間(1966 ~ 72年)에 比하여 (4,470万名) 2倍를 크게 上廻하였다.

다음 西「베르린」市民의 東獨 및 東「베르린」旅行 역시 極히 制限的으로 許容되어 왔으나 4大國 「베르린」協定の 假調印과 이에 依拠한 西「베르린」-東獨 通行協定の 締結以後 크게 緩和 되었다. 即 4大國 「베르린」協定の 發効(1972.6.3)以後 許容

되었으며 緊急한 家事的 境遇 乘用車를 利用한 旅行은 申請에 依하여 可能케 되었다.

### 3. 交通條約

2年余, 約 70 回の 協商後 1972年5月26日 西獨의 「바르」 (Bahr) 國務相과 東獨의 「콜」 (Kohl) 國務相間 東「베르린」에서 調印된 交通協定은 兩獨 一般通行에 關한 最初의 公式 國家 協定 이나 全文 33條로 構成된 同條約은 兩獨人의 相對地域 訪問을 크게 緩和하는 以外에도 鐵道通行, 荷物運送, 國內船舶利用, 自動車 運行 및 海運 等 包括적인 交通關係의 改善을 規定하고 있다. 即 兩獨間 交通은 勿論 兩地域을 經由한 第3國 通行도 그 對象이며 湖水, 域間水路 및 航路에 依한 旅行은 除外된다. 이 以外에도 同條約의 円滑한 運營을 爲하여 交通委員會가 設置되었는데 자주 會晤를 가져 實際 提起되는 諸問題를 解決하여 오고 있다.

同條約의 発効에 따라 西獨人의 對東獨 訪問의 範圍가 親戚에서 親知에로 擴大되었음은 勿論 年 1회로부터 30日을 넘지 않는 範圍內에서 回数에 對한 制限이 撤廢되었다. 過去 事前 承認을 받은 地域은 1日 潛在의 條件下 全東獨으로 그 對象이 擴大되었다. 이 밖의 商業, 文化, 「스포츠」 그리고 宗教的 趣旨인 境遇 東獨內 該當機關으로부터 招請狀이 있을때 何特라도 施行許可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兩獨 觀光庁間 協約에 따라 西獨人의 對東獨 觀光 旅行이 可能한데 이를 爲하여 西獨內 設置된 旅行社(東獨政府에



依하여 入国査証業務를 委任받은)에 「旅行許可 申請書」를 提出할 수 있다.

한편 東独人の 对西独 訪問 역시 同條約과 함께 크게 緩和되었는데 「緊急한 家庭用件」이 있는 境遇 1年 1週 以上 30日以内의 乘用車 旅行이 許容되었다. 対象은 年金惠沢者 以外에도 祖父母, 父母, 子息 및 兄弟 姉妹 等 가까운 親戚에 限하며 「緊急한 家庭用件」이란 出産, 結婚, 生命이 위독한 疾病 및 死亡 等を 말한다.

基本條約의 締結 以後 兩独 訪問은 한층 容易하여졌는데 몇가지 例를 든다면 우선 「小規模 境界地域 往来」를 爲해 4個의 道路越境区域이 設置되었다. 또 兩独間 56個의 接境市 및 州地域 居住者는 年 30日 以内 한번의 申請으로 3個月内 9回까지 1日 滞在를 前提로 東独의 接境 54個 地域을 訪問할 수 있게 되었다. 또 東独人の 对西独 訪問 条件에 있어서도 受惠人中 同母異父 兄弟 姉妹가 追加되었으며 「緊急한 家庭用件」도 結婚 60,65 및 70 年까지 包含하고 있다. <表 14, 15 및 16 >는 70年代 初 諸協定의 締結以後 兩独間 急速한 人的 往来의 增加를 보여 준다.

<表 14> 年度別 西独人斗—对東独 訪問者数

年 度	名	年 度	名
1967	1,423,738	1973	2,278,989
1968	1,261,441	1974	1,919,141
1969	1,107,077	1975	3,123,941
1970	1,254,084	1976	3,120,962
1971	1,267,355	1977	2,987,574
1972	1,540,381	1978	3,177,273

<資料> <表 13> 斗 同

<表 15> 兩独 接境地域 往来数

年 度	名
(7~12月)	
1973	192,900
1974	331,350
1975	463,190
1976	445,306
1977	443,021
1978	479,978
計	2,355,565

<資料> <表 13> 斗 同

<表 16> 東独内 老後 年金 生活者の 西独 訪問數

年 度	名	年 度	名
(11~12月)			
1964	664,435	1971	1,045,385
1965	1,218,325	1972	1,068,340
1966	1,055,498	1973	1,257,866
1967	1,072,496	1974	1,316,006
1968	1,047,359	1975	1,330,389
1969	1,042,191	1976	1,328,317
1970	1,042,070	1977	1,323,488
		1978	1,384,118

<資料> <表 13> 과 同

## 第 2 節 通信交流

61年 「베르린」封鎖 措置는 通信 交流에 있어서도 커다란 支障을 가져 왔으며 67年 8월에 이르러 兩独 通信相間 交渉이 始作되었으나 큰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即 通信交流의 性格에 있어서 西独이 国内 交流의 方式을 主張하였던데 反하여 東独이 國際交流의 形態를 強調하였기 때문이다.

1970年 4月 兩独 通信相間 郵便 및 電信交流에 關한 合意書가 調印됨으로써 部分的인 妥結에 이르렀으며 그 後 71年 9月 正式

으로 協定이 調印되었다.

全文 9條, 附則 7條로 構成된 同協定은 兩獨間 通信業務의 改善과 電話·電信業務의 擴大〔西「베르린」間 包含〕를 趣旨로 하고 있는데 이와함께 電話의 接線回数擴張, 關聯施設의 改善 및 郵便便宜 提供의 擴大 등이 이루어졌다.

基本條約 7條 및 附屬議定書 5項에 따르면 郵便과 電信關係 改善을 爲하여 西獨은 國際郵便聯盟(UTU) 및 國際電信電話條約(UIT)의 規定에 立脚하여 通信과 電信·電話 交流에 關한 2個의 協定을 締結하고 이를 兩國際機構에 通告한다는데 合意하고 있다. 卽 새로운 協定締結의 可能性을 示唆하며 이 境遇 既存協定과 雙方에 有利한 規定들이 이에 包含될 것을 意味한다.

다른 交流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國際法上의 對等한 國家로서, 그리고 國際機構의 테두리 內에서 兩獨間 郵便·電信交流의 擴大를 期하고 있으며 結局 東獨의 立場이 反映된 것으로도 보인다.

參考로 電話交流의 增加 內容을 살펴보면 <表 17>과 같다.

<表 17>

年度別 電話交流 回数

(單位: 百萬通話發信)

年 度	東·西獨間(「베르린」包含)	東·西「베르린」間
1970	0.7	
1971	1.8	0.8
1972	5.1	2.9
1973	5.8	2.8

年 度	東·西獨間 (「베르린」包含)	東·西「베르린」間
1974	6.1	2.7
1975	9.7	5.0
1976	11.3	7.4
1977	12.8	7.2
1978	16.7	8.3

<資 料> <表 13>과 同

### 第 3 節 社会·文化 文流

諸社会·文化 交流의 拡大를 爲한 關係協定の 締結이 基本條約 第 7 條 및 附屬議定書에 予定되고 있어 大部分 推進中에 있으나 具體的인 實現은 보다 國內外 統治的인 与件의 變化에 크게 左右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제껏 살핀 他部門과는 달리 社会·文化 交流의 增大는 政府次元이 아닌 民間水準의 接觸을 通하여도 追求 될 수 있으며 이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人的 往来와 같은 必要한 基礎的 背景이 確立되었으므로 구태여 國際承認을 意味하는 敏感한 問題를 피하기 爲해서라도 보다 政府間 活潑한 交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印象을 주고 있다.

#### 1. 文化, 學術 및 芸術 交流

이 部門에 있어서 兩獨間 交流는 1964年以後 比較的 活潑히 展開되고 있는데 民間·個人 또는 団体間 交渉에 依하며 音樂, 演劇 等 一部를 除外한다면 西獨人의 對東獨訪問이 主軸을 이루고 있다. 兩獨間 体制의 相異 또는 分斷의 持續에 따르는 異質的인 与件으로 因하여 相互 共通 關心分野는 多小 制限되는 듯한 印象을 주고 있다.

東獨側은 64年 文化協定の 締結 및 文化機構의 設置를 內容으로 하는 具體的인 提案을 通告한 以來 꾸준히 積極的인 立場을 取하였으나 西獨은 國家承認問題를 回避하기 爲하여 이를 拒絶하여 왔다.

基本條約의 締結과 함께 73年 11月 以後 文化協定을 爲한 協商이 再開되었다.

## 2. 其他 社會部門 交流

우선 體育部門에 있어서 兩獨間 接觸은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는데 이미 1945年 以後 西獨의 獨逸 스포츠聯盟(DSB)과 東獨의 獨逸體育聯盟(DTSB)은 45年 以來 꾸준한 交涉 結果 56年 「뮌헨」, 60年 「로마」 그리고 64年 東京에서 開催된 올림픽大會에 全獨逸 單一「팀」을 構成 派遣하였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頻繁한 體育交流를 契機로한 東獨體育人의 亡命, 「베르린」封鎖 또는 東獨의 呼稱과 같은 政治的 理由 등으로 68年 「멕시코」 올림픽大會 以後부터는 各各 分離 出戰하고 있다.

이에 體育交流가 크게 制限되었으며 72年 「문헨」大會 開催時 한 때 交涉이 活潑하였으나 聯盟의 呼稱 및 代表權 問題 등으로 何等의 結實을 보지 못하였다.

基本條約의 締結以後 關係改善을 爲한 接觸이 進行되고 있으나 政治的 立場의 不一致로 크게 制約받고 있다.

한편 同條約은 言論 放送部門에서의 交流를 多少 진척시켰는데 73年 以後 一部 西獨의 言論機關이 東獨內 支社의 設置와 함께 特派員을 駐屯시키고 있으며 兩獨의 新聞 및 雜誌社가 特殊한 境遇 相對地域內 入團 또는 必要한 서적의 구입이 可能하나 이 역시 크게 制限되어 있다.

## 第 4 章 結 論 및 評 価

### 1. 韓半島 와 의 類 型 比 較

一見하여 兩獨關係는 韓半島의 境遇와 매우 類似한 點이 많은 것 같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皮相的, 外形的 및 形式的 모습에 不 過하며 보다 綿密히 考察한다면 質的 差異는 勿論 程度에 있어서 도 크게 相反됨을 알 수 있다. 以下 重要한 類似點과 相異點을 要約코져 한다.

#### 1) 類似한 側面

가) 무엇보다도 傳統的으로 繼承되어 온 一民族, 一國家가 終戰과 함께 國內意思와는 無關하게 그리고 外勢 即 強大國間 妥協의 所産으로 分斷되었다는 點은 共通이다. 勿論 獨逸이 戰爭 挑 發國으로서의 責任으로 因하여 勝戰 聯合國에 依한 軍事的 分 割占領이 不可避하였던데 反하여 韓半島의 境遇 美·소에 依한 分斷·軍政은 過渡期的인 現象에 그칠 수 있었다는 差異는 있 다. 그러나 國民의 意思에 反하는 分斷이므로 兩地域內 恒常 統一問題가 論議될 수 있는 共通性을 갖고 있다.

나) 다음 分斷狀態의 持續과 当初 分斷을 招來한 強大國들의 統 一에 對한 消極的 態度를 들 수 있다.

獨逸의 境遇 兩次大戰을 誘發한 強大國으로서 分斷 그 自体가

世界平和의 定着에 寄与할 수 있다는 差異점이 있기는 하나 周辺 強大國間 勢力均衡 維持의 焦點地域으로 登場하고 있음은 韓國의 境遇와 恰似하다.

戰後 初期를 除外한다면 強大國이 積極的인 統一方案을 提示한 적이 거의 없으며 설사 어느 一方의 統一政策에 對하여 支持를 表明한다 하더라도 實質적으로 積極的인 行動을 取할 可能性은 排除되고 있다. 이는 強大國의 勢力均衡에 있어서 現狀을 維持하려는 消極的인 意圖에도 起因하나 分斷 自体가 相對 陣營과의 必要에 따라 協商을 할 수 있는 口實을 提供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實際로 統一에 있어서는 兩地域의 境遇 多같이 強大國이 커다란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을 뿐더러 이들間 協商, 妥協이 그 實現 可能性을 左右할 수 있음은 事實이다.

## 2) 相異한 側面

가) 韓半島에 比하여 獨逸에 있어서는 分斷狀態를 固定化시키려는 要因이 더크게 作用하고 있다.

「베르린」의 法的 地位 自体가 西方 強大國과 소련의 權限에 屬함은 勿論 東·西獨의 分立狀態가 「유럽」內 勢力均衡의 維持, 나아가 世界平和의 定着에 寄与하고 있다고 생각됨으로 分斷 狀況으로 부터의 어떠한 變動에도 關聯強大國들이 敏感한 反應을 나타낼 것이라는 點에서 現狀의 持續이 더욱 確實하다.



多边的 側面에서 살피더라도 西獨이 EEC, OECD, Council of Europe 및 NATO等 「유럽」内 經濟統合을 비롯하여 各種 軍事·政治 및 經濟機構에서 核心的인 役割을 担当하고 있는 反面 東獨 역시 「바르샤바」條約機構 및 COMECON과 같은 軍事 및 經濟機構内에서 소련 다음으로 重要的 立場에 있다. 이는 곧 東西獨의—各各 集團防衛에 對한 實質的인 防衛保障을 意味한다.

反面 韓半島가 이러한 狀態에 있지 않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南北韓이 獨逸과 같은 強大國의 立場에 있지 못하며 周邊 強大國과 強力한 政治·經濟 紐帶關係속에 있지 않음은 勿論 特히 北韓이 隣接 소聯과 中共으로 防衛保障을 받고 있는데 反하여 韓國에 對한 美國의 迅速하고도 實質的인 防衛保障은 再考의 余地를 남기고 있다.

나) 地理的인 面에서 「유럽」은 多數國家로 構成되었으며 西獨은 거의 中原에 位置하고 있다. 또 傳統的으로 「유럽」諸國들間 政治·經濟·社會 및 文化等 諸部門에서 密接한 關係를 維持하여 왔으며 相互 依存度도 높다.

이러한 側面이 비록 相反되는 體制를 갖고있다 하더라도 兩獨間 經濟를 비롯한 諸分野에서 去來 및 交流를 꾸준히 增加시켜오게 한 重要 要因으로 作用하여 왔다. 即 傳統的인 自由貿易主義 開放國家인 獨逸 内部事情 뿐만 아니라 周邊 國家들의 必要와 間接的인 期待에 副應하기 위해서라도 兩獨間

接觸이나 協商이 推進되었다.

反面 比較가 될 수 있는 國家들 間에 位置하는 獨逸과는 달리 韓半島는 中·소 및 日과 같은 規模面에서 크게 相異한 國家들을 주위에 갖고 있다. 이들 國家에 比하여 韓半島가 弱勢에 있고 特히 中·소 등이 낮은 貿易依存度を 갖고 있으며 美·日과의 去來에 있어서 空·水路를 利用하는 편이 보다 容易하다는 點 等은 實利面에서도 南北韓 去來의 推進에 何等 寄與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다) 國內的인 與件을 考慮하더라도 獨逸과 韓半島間 懸격한 差異가 存在한다.

우선 經濟的인 側面에서 前者가 先進工業國인 點과는 對照的으로 南北韓은 다같이 後進性을 脫皮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西獨은 東獨에 比할때 圧倒的인 位置에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東西獨間 面積, 資源賦存, 人口 等を 비롯한 懸격한 經濟的 懸差는 여러 側面에서 西獨地位의 強化에 크게 寄與하였다.

例로 軍事費 支出面에서 西獨의 境遇 GNP 對比 3.5% 内外, 東獨의 境遇 約6% 이기는 하나 絶對總額面에서의 差異로 因하여 이미 70年代初 以後 兩獨間 3倍 以上の 懸差를 나타내며 軍裝備는 勿論 兵力에 있어서도 西獨이 比較안될 程度로 앞서 있다.

또 西獨의 急速한 經濟成長은 對東獨 援助의 提供을 可能케

할 뿐만 아니라 援助國으로서의 立場은 그만큼 西獨의 發言權을 強化하고 있다.

이러한 兩獨間 經濟的 階差는 南北韓의 境遇와 아직까지는 比較될 수 있는 水準은 아닌 것 같다.

南北韓間 相異한 資源賦存 條件, 相反되는 經濟政策의 基調 또는 程度 및 質的 差異 등을 勘案해야 하나<sup>47)</sup> 經濟發展 過程에서 對外依存이 不可避하였으며 또 援助供與國 보다는 受 援助國의 立場에 있다. 勿論 韓國이 經濟規模, 所得水準 및 工業化 등에 있어서 北韓에 크게 앞서고 있으며 이러한 現象이 向後 深化될 展望이기는 하나 兩獨間 存在하는 階差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 軍事費 支出에 있어서도 GNP 對比에 있어서 最近 北韓의 境遇 23.5%에 位置하여 韓國의 6%内外를 크게 上廻함으로써 비록 GNP 規模面에서의 差異가 있다 하더라도 總額이 비슷하며 70年代 累計를 比較하면 오히려 北韓이 앞서고 있다. 더구나 兵力, 防衛施設, 攻擊武器 및 挑發性を 考慮한다면 兩獨間에서 볼 수 있는 平和의 維持에 對한 實質的인 保障을 期待하기 困難하다.

라) 體制面에서 살필때 東西獨과 韓半島間 質的인 差異가 있음을 看過할 수 없다.

東獨이 비록 社會主義 國家이기는 하나 傳統的인 保守主義的

註 47): 南北對話事務局, 南北韓間 經濟交流의 方向, 1980. 參照

—基督教—國家，個人主義의—發達，合理的—思考，높은 教育水準 및 西方의 影響 등으로 因하여 比較的 西方과의 妥協이 可能하며 또 開放的인 側面도 없지 않다.

그러나 北韓은 社會主義圈內에서 가장 挑戾的이며 또 極히 閉鎖的인 體制를 維持하고 있는데 近代社會의 不在，傳統的인 價值觀의 欠如 및 地理的인 孤立 등은 이러한 立場의 硬化를 한층 容易하게 하여주고 있다.

또 西獨에 比하더라도 韓國에 있어서는 條件에 適合한 民主主義의 土着化，合理的 및 人間的인 次元에서의 共產主義 諸短點에 對한 徹底한 認識 그리고 健全한 社會價值觀 및 哲學의 定立 등이 時急히 要請된다.

아) 「브란트」의 東方政策의 登場 以後 東西獨間 協商이 多分히 「協力型」으로 變하였는데 反하여 韓半島內에서는 아직까지 「統一型」을 前提로 接近이 試圖되고 있음을 指摘할 수 있다.

바) 끝으로 비록 統一에 對한 展望은 獨逸이나 韓半島內에서 다 같이 遙遠하나 이에 對한 接近에 있어서 커다란 差異를 나타낸다.

兩獨이 「先 平和定着，後 統一論議」에 對하여는 當初부터 意見을 같이하여 왔으며 國內 外軍駐屯 自体는 이를 위한 實質的인 保障으로 看做되고 있다.

또 平和協定，軍備縮小나 不可侵條約 등이 「유럽」內 勢力均衡 또는 徹底한 牽制 및 監視 등을 通하여 實質的으로 效果를 갖는다.

그러나 韓半島內에서는 韓國이 「先平和, 後統一」을 主張하는데 反하여 北韓은 後述하는 바와 같이 統一, 總選舉, 軍備縮小, 不可侵協定, 平和協定 그리고 諸部門에 있어서의 交流等 모든 提案에 있어서의 前提는 外軍撤收 및 外勢干涉 排除이다. 이미 6.25 動亂을 經驗하였으며 軍備의 強化, 間諜 南派 또는 北韓內 對南 敵愾心의 刺戟을 위한 諸 教育·訓練 등은 이러한 提案의 偽裝을 말하여 준다. 또 獨逸이 屢한 與件과는 달리 韓國이 北韓의 提案을 受諾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한 何等의 實質的인 保障이 韓半島에 存在하지 不은 勿論이다.

## 2. 評 價

### ( 兩獨關係 發展의 韓半島 適用 可能性 )

#### 1) 兩獨關係의 發展類型

兩獨에만 局限시킨다면 「아데나워」-「키싱거」-「브란트」-「슈미즈」로 이어지는 西獨의 對東獨政策을 外觀的인 形態의 側面에서 본다면 梗塞期-共存期-協力期로 그 展開過程을 要約할 수 있다.

初期 「아데나워」는 UN의 主宰下 自由選舉의 實施를 통한 獨逸 統一方案이 東獨側의 拒否로 挫折되자 西獨의 唯一한 代表權을 위시하여 「할슈타인」原則의 追求, 東獨과의 協商 拒否 및 國境(東獨 東部の 「오데르-나이제」)의 不承認等 極히 非妥協的인 強硬政策을 推進하였다. 이 政策의 非現實性은

「에르하르트」-「키싱거」時代に 이르러 東独의 实体를 認定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며 其他 政策基調의 遂行에 있어서도 實質的으로 彈力的인 運營을 期하게 하였다.

그러나 基民黨 主軸下의 大聯政에 依한 이러한 伸縮的인 政策運營 역시 限界에 부딪쳤으며 結局 「브란트」의 登場과 함께 公式的으로 「아데나워」路線을 拋棄함으로써 新東方政策이 擡頭되었다.

한편 東独 역시 建立初期 自國 政府만이 國民에 依한 唯一한 合法政府임을 主張하였으나 西独과 協商의 進展에 따라 或은 소련의 反應을 勘案하여 一民族, 二國家論으로 轉向한 後 다시금 二民族, 二國家論으로 態度를 굳혔다. 이와같은 立場의 變化는 西独의 政策 適應에 한발앞서 取해짐으로써 恒常 自國에 有利하게 妥協點을 誘導하기 위한 高地를 차지하려는 듯한 印象을 주어왔다.

「브란트」의 對東独政策 展開에 있어서 大前提는 한마디로 「現實의 与件」을 正確히 把握하는데 있었다. 即 平和的이던 또는 武力에 依하던 一方이 他方을 吸收하는 再統一이 現實적으로 不可能하며 또 그 展望을 予測할 수 없을때 非妥協的인 双方의 主張은 協商과 交流를 막음으로써 結局 異質體制間 分斷을 더욱 深化, 永久化시키는 結果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72年의 基本條約은 相互 國家 承認은 하나 國際法(東独主張) 或은 國內法(西独主張)에 依하는지의 与否에

關한 兩獨間 見解差를 그대로 밝히고 있어 共通된 立場만을 明示하고 있다.

同 條約의 根本的인 趣旨은 相互 主權의 尊重과 平和定着을 通한 兩獨間 關係正常化는 勿論 經濟·社會·文化 等 諸 側面에서 去來 및 交流를 增大하자는데 있다.

分斷 初期부터 兩獨間 여러部門에서 協商이 進行되어 왔고 또 交流도 있었으나 同 條約의 締結로 法的 性格이 明白해 졌으며 이러한 關係의 正常化에 따라 向後 交流의 擴大가 더욱 容易해졌다.

同 條約의 締結을 前後로 「베르린」通行協定, 兩獨間 一般交通協定을 비롯하여 交流의 增大에 寄與할 수 있는 措置가 많이 取해졌으며 經濟的인 側面에서도 急速히 去來가 擴大되고 있고 79年 以來 長期貿易協定の 締結과 함께 財政·技術協力の 強化를 위한 接觸이 活潑히 推進되고 있다. 또 民間水準에서도 協商이 많은 部門에서 活潑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類型의 西獨政策이 分斷을 既定事實化하는 結果를 가져옴으로써 오히려 統一에 支障을 招來한다는 非難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現實을 냉철히 檢討할때 어떤 다른對案이 있을까?

結局 이는 理想을 實現할 수 있는 可能性이 거의 없을때 現實主義에 立脚한 次善의 政策이라 하겠으며 統一을 위한 國內外的 與件이 成熟될 때까지 相互 接觸, 交流를 通하여 그나마

1980年代 부터 形成, 繼承되어온 獨逸民族의 單一性을 國民들의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는 것만이 現在의 環境을 克服하는 賢明한 方法일 수도 있다. 勿論 이러한 兩獨關係가 漸次 반드 시 改善되어 나간다는 確實한 保障은 없다. 왜냐하면 特히 4 強大國이 아직도 直·間接적으로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다는 點에서 國際政治·軍事的 狀況·變動이 現 兩獨關係에 그 余波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2) 教 訓

南北韓關係의 發展을 兩獨間의 境遇에 比한다면 韓國이 建立 初期 이승만에 依한 唯一한 合法政府라는 主張에서 70年代 現實을 意識한 보다 柔軟한 立場을 摸索하고 있는데 反하여 北韓은 始終一貫 基本態度를 固守하여 오고 있다.

即 UN 臨時韓國委員會의 監視下에 南韓地域에서만 總選舉가 實施되어 制憲國會의 構成後, 憲法의 制定과 함께 政府가 樹立, 48年 8月 15日 韓國의 獨立이 宣布되었다. 反面 北韓側은 UN 監視委員會의 役割을 拒否하고 獨自적으로 同年 8月 25日 政府를 構成한 後 正統性和 代表性을 主張하기 始作하였다.

그後 UN監視下 南北韓 自由選舉는 統一에 對한 韓國의 公式的인 立場으로 持續하였으며 北韓이 이를 受諾하지 않는 限 韓國의 唯一한 合法性은 이승만에 依한 統一 對案의 主軸을 이루어왔는데 이 點 「아데나워」의 對東獨政策과 크게 類似하다.



이에 대한北韓側의主張은 外勢干涉의 排除와 美軍의 撤収를 前提로 한 自由選舉였으나 이는 6.25 南侵의 事例에서도 再確認될 수 있듯이 武力統一을 위한 偽裝된 平和統一論임은 너무나도 自明하다. 48) 北韓은 모든 部門에 있어서 協商의 條件으로 恒常 이러한 立場을 固守하여 오고 있다.

5.16 革命 以後 60年代 共和黨政府에 依한 對北韓 政策은 統一에 對處할 수 있는 實力培養에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朴大統領은 70年代 부터 積極的인 立場을 取하기 始作하였다.

구대역 兩獨間 關係에 比한다면 槓塞期에서 共存期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人道的 側面에서의 交流 및 平和的 共存을 提議한 70年 8.15 宣言 以後 南北韓間 接觸은 多小 活氣를 띠는듯 했다.

即 71年 8月 南北韓 分斷以後 最初로 南北赤十字會談이 實現되었고 72年 7.4 共同聲明이 發表되었다. 이로서 南北韓間 가장 急先務的인 人道的 次元에서의 接觸問題를 다루기 위한 民間水準에서의 南北赤十字會談 그리고 政府水準의 南北調節委員會가 設置되어 數次에 걸친 交渉이 進行된 바 있다.

73年 朴大統領의 6.23 宣言에 依한 南北韓間 相互 內政不干涉 및 統一에 支障이 없는 限 UN 同時加入 등의 提案이나

---

註 48): 北韓의 對南政策에 關한 部門別 諸 提案은, 會談事務局, 北韓의 統一提案 內容別 綜合, 1980.2에 잘 分類, 要約되어 있음

74年 1月 不可侵協定 締結에 關한 提議 등은 共存期의 始作을 意味하며 77年 南北韓間 經濟去來의 開始를 위한 提案은 統一에 對한 機能主義的 接近의 立場을 再確認하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韓國側의 諸 試圖는 그間 國內外的 諸與件의 變化, 特히 北側의 挑發的 行爲로 因하여 無効로 되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며 다시 梗塞期로 되돌아 간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以上을 綜合하여 兩獨間 關係發展을 韓半島에 適用시킬때 다음과 같은 示唆와 限界를 指摘할 수 있다.

첫째 相異한 體制의 分斷國家에 있어서도 極端的으로는 統一을 論함이 없이 經濟, 文化, 社會等 諸部門에서의 去來 및 交流가 可能하며 이를 阻害하는 어떠한 要因도 相互 意志로 克服할 수 있다는 點이다. 特히 統一에 對한 展望이 確實치 않을때 이러한 接近이 分斷의 既定事實化, 永久化 보다는 統一을 容易케 하는 肯定的인 寄與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兩獨間 交流가 與件에 依하여 또는 自然의 必要에 따라 비록 制限的 이기는 하나 이미 分斷 初期부터 持續되어 왔는데 비하여 南北韓間 交涉이나 去來의 開始에 있어서는 雙方間 政治的 合意를 前提로 하고 있다는 點이다. 비록 非政治 分野에 있어서 交流이기는 하나 이 역시 南北韓 當局間 政治的 決斷을 必要로 한다.

셋째 兩獨間의 境遇 一民族 或은 二民族 이든간에 相互基本條約의 締結을 통한 그리고 現實의 制約을 充分히 認定한 相互 國家承認

關係라는 點에서 「協力型」을 択하고 있다. 그러나 韓半島에 있어서는 相互 交流에 관한 모든 提案이 統一에 이르는 「統一 指向型」이 아니고서는 受諾될 수 없으며 이러한 側面을 外面하는 境遇 傳統的 單一民族性을 背反한다는 印象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對內外的으로 大義名分도 갖지 못한다는 點을 強調하고 싶다.

相互 極히 相反되는 現体制를 勘案할때 非政治 部門의 交流中 經濟去來 부터 試圖해야 될 줄 믿으며 이는 東西獨의 例에서도 同一하다. 그러나 이러한 經濟去來 역시 窮極的으로는 段階別로 「韓民族 共同体」의 樹立과 같이 統一에 이룰수 있는 機能主義的 接近에 立脚한다는 內容이 最小限 韓國側의 公式的인 提案에 包含되어야 한다.

넷째 兩獨關係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特徵中의 하나는 西獨이 諸側面에서 優位에 있다는 事實이며 이러한 位置가 오늘날 協力期를 存在 可能케 할 수 있는 가장 根本的인 要因이라고 생각된다.

兩獨間 關係의 展開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重要한 教訓中의 하나는 韓國이 南北關係를 願하는 方向으로 誘導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安定의 바탕위에서 早速히 經濟大國으로 登場하여야 하며 이는 同時에 國防面에서의 優位를 可能케 할 수 있다. 또 体制의 長點을 誇示할 수 있는 民主主義의 土着化도 併行되어야 함은 勿論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南北韓間 關係正常化는 絶對로 서두를 必要가 없다고 보며 理想的인 統一 對案을 提示한 後 우선 經濟部門, 人道的 側面에서의 段階別 接近을 試圖하는 一方 內實을 充分히 다져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그間 韓國側의 經濟交流에 關한 提案이 援助 提供의 用意나 垂直分業(韓國 工產品輸出 對 北韓 一次產品 輸出과 같은) 提議等 多少 優位를 誇示한 側面이 없지않다. 實際로 去來를 可能케 하기 위하여는 北韓의 열등의식을 刺戟치 않는다는 意味에서 보다 처等한 立場이 強調되어야 한다. 去來가 이루어진다면 經濟·産業構造나 體制 또는 能力面으로 미루어 北韓의 劣勢는 自明하며 이는 兩獨間 經濟關係를 通하여도 알 수 있다.

여섯째 兩獨關係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南北韓間 關係에 있어서도 비록 程度의 差異는 있으나 周邊強大國의 影響力이 重要한 因子로 作用할 수 있다는 點이다. 前者의 境遇에 比하여 中共 및 日本이 追加될 수 있는데 相互 交叉關係를 南北韓 關係의 展開에 有利하도록 誘導할 수 있는 外交政策의 確立이 必要하다.

끝으로 이와 關聯하여 東獨이 「유럽」中原에 位置하여 西方은 勿論 國際輿論이나 趨勢에 影響을 받고 또 獨自的으로 無理한 行動을 할 수 없듯이 北韓으로 하여금 閉鎖體制의 強化 및 對 第3世界 一辺倒의 外交政策에만 置重하지 않도록 可能的 限 西方世界와의 接觸이나 多邊關係에 吸收되도록 誘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韓國側은 社會主義圈이나 第3世界와의 關係改善 및 擴大를 前提로 北韓의 對西方關係 發展의 沮止에 너무 執着할 必要만은 없다고 본다.